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43
----------	-----

2019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9. 5. 31.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회부일자 : 2019. 6. 3.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9. 6. 25.)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2019. 6. 27.)
    - 의결

## Ⅱ. 제안설명 요지 (교육행정국장 정해철)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지방회계법령에 의거하여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결산 총괄

- 201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369억원을 포함한 10조 4,884억원임
  - 세입결산액은 10조 9,126억원,
  - 세출결산액은 9조 6,006억원이며
  - 세계잉여금은 1조 3,120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421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99억원임

#### 나. 세입결산

- 2018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10조 9,126억원으로  
세입징수결정액 10조 9,269억원 대비 99.9%를 수납하였으며,
  - 불납결손액은 약 6억원이며,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3%인 138억원임

○ 세입재원의 구성비율은

- 교육부 및 서울시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8.2%,
-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1.9%,
- 지방교육채가 1.2%,
- 이월금이 8.7%임

○ 재원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교육부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조 2,314억원과  
국고보조금 319억원  
총 5조 2,633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8.2%임

○ 서울시로부터 이전되는 수입은

- 법정전입금 3조 4,804억원과  
공공도서관운영비 등 비법정전입금 2,593억원 등  
총 3조 7,397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의 34.3%임

○ 자체수입은 2,029억원으로 전체 세입결산액의 1.9%임

○ 세입 미수납액 및 불납결손액을 살펴보면,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13%인  
137억 5천 9백만원이며,
- 불납결손 처분액은 5억 7천 1백만원임

## 다. 세출결산

- 총 세출결산액은 9조 6,00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5,421억원이며,
  -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3,457억원임
  
- 정책사업별 결산 내역은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에 8조 9,600억원,
  -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57억원,
  - 교육일반 부문에 6,149억원을 지출함
  
- 세출 성질별 집행내역은
  - 인건비는 총 지출액의 37.6%인 3조 6,107억원,
  - 물건비 4,206억원으로 4.4%,
  - 이전지출은 1조 1,120억원으로 11.6%,
  - 자산취득 5,934억원으로 6.2%,
  - 상환지출에 4,005억원으로 4.2%,
  - 전출금등 지출에 3조 4,500억원으로 35.9%,
  - 예비비 및 기타 경비에 134억원을 지출함
  
- 집행잔액 내역은
  - 인건비 938억원(27.1%), 물건비 363억원(10.5%),  
이전지출 476억원(13.8%), 자산취득 616억원(17.8%),  
상환지출 43억원(1.2%), 전출금 등 974억원(28.2%),  
예비비 및 기타 47억원(1.4%) 등  
모두 3,457억원이 미집행되었고, 예산현액대비 3.3%임

- 집행잔액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257억원,  
 지급사유미발생 43억원,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으로 3,157억원임

## **라.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2018년도 예산 이용 내역은 없음
- 예산 전용은 102억원으로  
 9급 일반직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장 운영 경비 부족분 충당을 위한  
 전용 등 총 71건임
- 예산 이체는 109억원으로,  
 2018.1.1. 교육공간기획단 신설 등 조직개편 관련 이체 등 총 9건임

## **마. 다음연도 이월액**

- 다음연도
  - 총 이월액은 1,199개 사업에 5,421억원으로,
  - 명시이월액은 308건, 1,836억원이며,
  - 사고이월액은 891건, 3,585억원임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8회계연도말
  - 공유재산 총액은 30조 3,859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65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 보유 정수물품 총액은 870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8억원이 감소함

## **사.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채권 총액은
  - 2018년도 중 59억 5백만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983억원임
  - 채무액은  
2018년도 말 현재 1조 1,691억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1,570억원의 채무가 감소함

## **아. 재무제표**

- 2018회계연도말 재정상태는
  - 자산은 전년말 대비 5,494억원이 증가된  
15조 4,220억원이며,
  - 부채는 1,972억원이 감소된 1조 9,684억원임
  - 따라서 순자산은 7,466억원 증가한 13조 4,536억원임

## **자.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 76개 중 64개 지표가 계획대비 달성되어  
달성율 84.2%임

###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 1. 결산개요

- 2018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9조 1,512억 6,700만원에
추가경정예산 증액분	7,342억 4,300만원과
간주처리분	1,660억 1,200만원을 더한
총 예산액은	10조 515억 2,2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규모임	

- 2018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은	10조 515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	4,368억 8,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조 4,884억 900만원이며
전년대비 5.7%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9.7%, 9,614억 4,900만원 증가한 10조 9,125억 6,900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6.7%, 6,015억 1,900만원 증가한 9조 6,005억 6,4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3,599억 3,000만원이 증가한 1조 3,120억 500만원으로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698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음

## 2. 세입결산

### 가. 세입결산 총괄

- 세입(歲入)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 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은 재원별 구분에 따라 이전수입, 자체 수입, 지방교육채 및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10조 9,125억 6,900만원으로 예산현액(10조 4,884억 900만원) 보다 4,241억 6,0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서 직전회계연도(9조 9,511억 2,000만원) 보다 9.7%, 9,614억 4,9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결산액) (C)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증감 (C-A)	증감률 (C/A)	증감 (C-B) <sup>주1</sup>	증감률 (C/B)
2018	10,488,409	10,926,900	10,912,569	424,160	104.0	△14,331	99.87
2017	9,921,584	9,966,167	9,951,120	29,536	100.3	△15,047	99.85
증감액	566,825	960,733	961,449				
증감률	5.7	9.6	9.7				

주1. 미수납액(137억 6,000만원)과 불납결손액(5억 7,100만원)의 합

- 실제 수납액은 10조 9,125억 6,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10조 9,269억) 보다 137억 6,000만원이 미수납된 것임



〈표 3-2〉 세입결산 중 미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미수납액	
			수납률 (B/A)		전년대비 증감액
2018	10,926,900	10,912,569	99.87	13,760	△886
2017	9,966,167	9,951,120	99.85	14,646	△480
2016	9,191,221	9,175,804	99.83	15,126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이전수입 88.2%, 이월금 8.7%, 자체수입 1.9%, 지방교육채 1.2% 순으로 구성되고 있음

〈표 3-3〉 재원별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C)		예산현액대비	
				구성비	증감 (C-A)	수납률 (C/A)
합계	10,488,409	10,926,900	10,912,569	100.0	424,160	104.0
이전수입	9,238,813	9,624,163	9,624,163	88.2	385,350	104.1
이월금	952,075	952,075	952,075	8.7	0	100.0
자체수입	164,081	217,222	202,891	1.9	38,810	123.7
지방교육채	133,440	133,440	133,440	1.2	0	100.0

## 나. 이전수입

- **이전수입**은 의존재원으로서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며, 지방세에 대한 징수권이 없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이전수입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임
- 2018회계연도 **이전수입**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8.2%, 9조 6,241억 6,300만원으로 예산현액(9조 2,388억 1,300만원)보다 3,853억 5,000만원 초과 수납된 바,
  - 초과수납된 원인은 지방소득세 증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본예산 편성시보다 4,029억 8,000만원 초과 수납되었기 때문임

〈표 3-4〉 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C)		예산현액대비	
				구성비 <sup>주1</sup>	증 감 (C-A)	수납률 (C/A)
이 전 수 입	9,238,813	9,624,163	9,624,163	88.2	385,350	104.1
중 앙 정 부 이 전 수 입	5,876,015	5,866,778	5,866,778	53.8	△9,237	99.8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전 수 입	3,336,765	3,739,745	3,739,745	34.3	402,980	112.0
기 타 이 전 수 입	26,033	17,640	17,640	0.1	△8,393	67.7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 (1)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전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됨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중앙정부이전수입**은 5조 8,667억 7,8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의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5조 8,760억 1,500만원) 보다 △92억 3,7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5〉 중앙정부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C)		예산현액대비	
				구성비 <sup>주1</sup>	증 감 (C-A)	수납률 (C/A)
중앙정부이전수입	5,876,015	5,866,778	5,866,778	53.8	△9,237	9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36,815	5,231,367	5,231,367	47.9	△5,448	99.9
보 통 교 부 금	5,049,688	5,049,688	5,049,688	46.3	0	100.0
특 별 교 부 금	187,127	181,679	181,679	1.7	△5,448	97.1
국 고 보 조 금	35,702	31,913	31,913	0.3	△3,789	89.4
특 별 회 계 전 입 금	603,498	603,498	603,498	5.5	0	100.0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2018년 2월, 교육부의 확정 교부(4조 7,072억 5,400만원) 및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지방교육재정 정산분(3,424억 3,400만원)교부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5조 496억 8,800만원) 전액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은 예산현액 대비 △54억 4,800만원 감수납된 바, 특별교부금 집행 정산으로 발생한 감교부 △98억 1,700만원과 12월에 교부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특별교부금 43억 6,900만원을 예산편성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37억 8,9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교육급여사업에서 당초 예산액 대비 감수납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 교육급여(국고보조금)사업비가 179억 9,900만원으로 가내시되어 2018년도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이후('18.6.)인 2018년 10월 중 142억 1,0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추경예산에 반영이 어려워 △37억 8,900만원이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임

〈표 3-6〉 교육급여 국고보조금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가내시액 (내시일)	세입예산액 (확정일)	변경내시액 (내시일)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 (가내시액) 대비	징수결정액 (최종내시액) 대비
17,999 (2017.9.14.)	17,999 (2017.12.15.)	14,210 (2018.10.12.)	14,210	14,210	△3,789	0

- 교육급여(국고보조금)사업비의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 발생 문제에 대한 지적은 '16~'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적시되어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아니하고 반복되는 바,
- 이는 동 문제에 대한 사업부서의 적극적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은 사례로 조속히 개선하여 수지균형에 기초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별회계전입금**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정부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교부되는 전입금으로 2018년 2월 교육부 배정액에 따라 편성된 예산액 (6,034억 9,800만원) 전액이 전입된 것으로 확인됨

##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으로 구성됨
-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액은 3조 7,397억 4,500만원으로 예산현액(3조 3,367억 6,500만원) 보다 12.0%, 4,029억 8,0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임

〈표 3-7〉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C)		예산현액대비	
			구성비 <sup>주1</sup>	증 감 (C-A)	수납률 (C/A)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336,765	3,739,745	3,739,745	34.3	402,980	112.0
법 정 이 전 수 입	3,077,535	3,480,436	3,480,436	31.9	402,901	113.0
지 방 교 육 세	1,458,184	1,647,280	1,647,280	15.1	189,096	112.9
담 배 소 비 세	280,972	281,189	281,189	2.6	217	100.1
시 도 세	1,230,170	1,442,112	1,442,112	13.2	211,942	117.2
학 교 용 지 일반회계부담금	9,056	9,056	9,056	0.1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 전 금	87,153	91,326	91,326	0.8	4,173	104.8
교육급여보조금	12,000	9,473	9,473	0.1	△2,527	78.9
비 법 정 이 전 수 입	259,230	259,309	259,309	2.4	79	100.0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 **법정이전수입**이 예산현액 보다 4,029억 100만원 초과수납된 것은
  - ① 서울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따라 교육청으로 전출한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시도세가 당초보다 4,012억 5,500만원 초과 전입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은 당초보다 41억 7,300만원 초과 전입되었으나, ② 교육급여보조금은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2,7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교육급여보조금의 경우, 국비(국고보조금)와 지방비(교육급여보조금)의 부담비율에 따라 국비(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연동하여 지방비(교육급여보조금)도 변경 내시된 바, 교육청의 추경이후인 '18년 10월 변경내시됨에 따라 변경내시액(94억 7,3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 이른바 '장부상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됨

〈표 3-8〉 교육급여보조금(지방비)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가내시액 (내시일)	세입예산액 (확정일)	변경내시액 (내시일)	정 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세입예산액 (가내시액)대비	정수결정액 대비
12,000 (2017.9.20.)	12,000 (2017.12.15.)	9,473 (2018.10.17.)	9,473	9,473	△2,527	0

- 아울러, 서울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서울시교육청에 2,999억 100만원을 추가로 전출하여야 하며, 서울시의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음

## 다. 자체수입

### (1) 자체수입 세입 관련

- 자체수입은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 수업료 및 입학금과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시·도교육청이 공공 서비스활동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징수하는 수입임
- 2018회계연도 자체수입 결산액은 2,028억 9,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의 1.9%를 차지하며, 예산현액(1,640억 8,100만원) 보다 23.7%, 388억 1,000만원 증가된 것이나, 징수결정액(2,172억 2,200만원) 대비 △6.6%, △143억 3,100만원 감수납된 것으로 검토됨

〈표 3-9〉 자체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B)	수납액(C)			불 납 결 손 액 (D)	미수납액 (B-C-D)	
			수납률 (C/B)	구성비 <sup>1</sup>				
자체수입 계	164,081	217,222	202,891	93.4	1.9	571	13,760	
교수·학습 활동수입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10,028	110,753	109,981	99.3	1.0	152	620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2,445	1,951	1,951	100.0	0.0	0	0
행정활동 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	5,453	5,241	5,229	99.8	0.0	0	12
자산수입	자산임대수입	475	463	445	96.1	0.0	0	18
	자산매각대	25,942	22,472	22,463	99.9	0.2	0	9
이자수입	이 자 수 입	4,108	20,299	20,299	100.0	0.2	0	0
자체수입	용자금원금회수	0	4,424	4,424	100.0	0.0	0	0
	보증금회수	0	54	54	100.0	0.0	0	0
	체제금수입	1,065	2,099	1,717	81.8	0.0	45	337
	기 타 수 입	13,493	35,687	35,665	99.9	0.3	0	22
	과년도수입	1,072	13,779	663	4.8	0.0	374	12,742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 직전회계연도의 자체수입 규모와 비교하면 직전회계연도(1,809억



9,600만원)보다 218억 9,500만원 증가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직전회계연도(92.3%)보다 1.1%p 증가된 93.4%인 것으로 검토됨

〈표 3-10〉 자체수입 수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8			2017			증 감 수납액 (B-D)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비율 (B/A)	징수결정액 (C)	수납액(D)	비율 (D/C)	
자체수입 계		217,222	202,891	93.4	196,043	180,996	92.3	21,895
교수- 학습 활동수	기본적교육수입 (입학금및수업료)	110,753	109,981	99.3	122,067	120,848	99.0	△10,867
	선택적교육수입 (평생학습수입 등)	1,951	1,951	100.0	1,945	1,945	100.0	6
행정 활동수	사용료 및 수수료	5,241	5,229	99.8	5,482	5,464	99.7	△235
자산 수입	자산임대수입	463	445	96.1	444	407	91.7	38
	자산매각대	22,472	22,463	99.9	14,438	14,390	99.7	8,073
이자 수입	이 자 수 입	20,299	20,299	100.0	3,647	3,647	100.0	16,652
금융 자산 회수	융자금원금회수	4,424	4,424	100.0	0	0	0.0	4,424
	보증금회수	54	54	100.0	415	415	100.0	△361
기타 수입	제재금수입	2,099	1,717	81.8	2,170	1,117	51.5	600
	기 타 수 입	35,687	35,665	99.9	32,140	32,122	99.9	3,543
	과년도수입	13,779	663	4.8	13,295	641	4.8	22

- 자체수입의 54.2%를 차지하는 **입학금 및 수업료**는 징수결정액 (1,107억 5,300만원)의 99.3%인 1,099억 8,100만원이 수납 되어 직전회계연도(1,208억 4,800만원)보다 △108억 6,700만원이 감소된 바,
  - 입학금 및 수업료는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성장률, 지방교육재정 여건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나, 서울시교육청이 물가안정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부터 동결함에 따라 학생 수 감소와 연동하여 매년 감소되고 있음

〈표 3-11〉 입학금 및 수업료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회계연도		2018	2017	2016	2015	2014 <sup>주1</sup>
입학금 및 수업료	금액	109,981	120,848	128,728	131,251	140,991
	전년대비 증감률	△9.0	△6.1	△1.9	△6.9	△9.0
학생수 <sup>주2</sup>	인원	105,094	114,008	120,836	124,160	128,375
	전년대비 증감률	△7.8	△5.7	△2.7	△3.3	△3.6

주1. 누리과정지원 유아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실시

주2. 서울교육통계(매년 4.1.) 기준으로 공립 유치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수

- 자체수입의 10.0%를 차지하는 **이자수입**은 직전회계연도(36억 4,700만원) 보다 456.6%, 166억 5,200만원이 증가한 202억 9,900만원인 바
- 지난 2016회계연도 중 가입한 정기예금(4,270억원)을 만기('17년 3월)가 경과된 '18년 4월과 9월에 해지함으로써 그간 누적된 이자수입(117억원)이 발생한 바, 직전회계연도보다 이자수입이 456.6% 증가된 주요 사유로 검토됨

〈표 3-12〉 이자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 금		정기예금		기타예금	
	일평균 잔액 (③=①+②)	총예금 이자 (C=A+B)	일평균 잔액 ①	정기예금 이자 (A)	일평균 잔액 ②	기타예금 이자 (B)
2018	1,056,231	20,299 (100.0)	903,956	18,654 (91.9)	152,275	1,645 (8.1)
2017	782,916	3,647 (100.0)	536,561	1,221 (33.5)	246,355	2,426 (66.5)
2016	668,865	9,094 (100.0)	435,677	5,794 (63.7)	233,188	3,300 (36.3)

※ ( )는 총예금이자에 대한 비율임

- 자체수입의 11.1%를 차지하는 **자산매각대**는 직전회계연도(143억 9,000만원) 보다 56.1% 증가한 224억 6,300만원으로 염리 제3구역 부지 매각, 가칭 노이초 부지 유상이관 및 가곡초 학교용 지 매각금 징수 등에 따라 증가된 것임
- 자체수입의 2.2%를 차지하는 **용자금원금회수**는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서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이 발생한 기관에 잉여금을 반환해주는 것으로 이전 회계연도에는 세입처리된 내역이 없으나 '18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44억 2,400만원 세입처리 된 것으로 확인됨
- 자체수입의 17.6%를 차지하는 **기타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 목적 사업비 반납금 등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356억 6,500만원이 수납된 바, 직전회계연도(321억 2,200만원)보다 35억 4,300만원이 증가된 것임

○ 2018회계연도 자체수입 규모 및 수납률이 직전회계연도(1,809억 9,600만원) 보다 12.0%, 218억 9,500만원 증가한 바,

- 일시적인 수입인 **이자수입·자산매각대·융자금원금회수·기타수입**이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및수업료)**은 감소한 바,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계획에 따라 동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자체수입 규모는 추가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사료됨

## (2) 자체수입 미수납액 관련

○ 2018회계연도 자체수입 미수납액은 137억 6,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2,172억 2,200만원) 대비 미수납률은 6.3%로 검토됨

〈표 3-13〉 자체수입 미수납액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금액(B)	비율 (B/A)	금액(C)	비율 (C/A)	금액 (D=A-B-C)	비율 (D/A)
2018	217,222	202,891	93.4	571	0.26	13,760	6.3
2017	196,043	180,996	92.3	401	0.20	14,646	7.5
전년대비 증 감	21,179	21,895	1.1	170	0.06	△886	△1.2

○ 미수납액 발생 사유를 검토하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80억 2,600만원(58.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중’ 42억 100만원(30.6%), ‘납부자태만’ 7억 7,200만원(5.6%) 순으로 검토됨

〈표 3-14〉 자체수입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미수납액	사 유 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 타
2018	13,760 (100.0)	140 (1.0)	237 (1.7)	8,026 (58.3)	772 (5.6)	4,201 (30.6)	384 (2.8)
2017	14,646 (100.0)	391 (2.7)	123 (0.8)	8,013 (54.7)	1,401 (9.6)	4,167 (28.4)	551 (3.8)
전년도 대비증감	△886	△251	114	13	△629	34	△167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전체 미수납액은 △8억 8,600만원 (△1.2%p) 감소되고 재산압류 중인 미수납액도 3,400만원 증가한 바, 서울시교육청은 미수납액 관리를 위해 미납자의 재산 조회 및 재산압류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에 따른 미수납액은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1억 2,700만원 증가한 바, 개별 미납사유에 대해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수업료 미납의 경우, 강제적 징수체계 도입에 한계가 있고, 교육의 목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시효소멸 조기 적용 등 보다 합리적인 적용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5〉 자체수입 미수납액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C)	미수납			미수납 내역
					금액 (D=A-B-C)	미수 납률 (D/A)	구성 비율	
합 계	156,649	189,694	175,363	571	13,760	7.3	100	
수업료 (지난연도 수업료)	109,967	110,701	109,929	152	620	0.6	4.5	0 수업료 : 286 -유치원 : 1 -고등학교 : 285 0 지난년도 수업료 : 334 -고등학교 : 334
사용료 수입	4,644	4,596	4,584	0	12	0.3	0.1	0 토지사용료 : 12
임대료수입	475	463	445	0	18	3.9	0.1	0 대부료 : 18
토지매각	25,935	22,392	22,383	0	9	0.1	0.1	0 공유재산 매각대금 : 9
변상금	728	1,005	748	0	257	25.6	1.8	0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 257
위약금	22	421	418	0	3	0.7	0.1	0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증가산금 : 3
연체료	126	253	181	45	27	10.7	0.2	0 변상금연체료 : 24 0 토지사용료연체료 : 1 0 과태료연체료 : 2
과태료	189	397	347	0	50	12.6	0.3	0 학원과태료 : 50
기타 수입	13,491	35,687	35,665	0	22	0.1	0.2	0 소송비용액 : 8 0 대부료 및 변상금분납이자 등 : 14
과년도수입	1,072	13,779	663	374	12,742	92.5	92.6	0 토지매각대금 : 9 0 대지료 : 170 0 변상금 : 6,141 0 위약금 : 2,266 0 변상금분납이자 : 121 0 부당이득금 : 2,946 0 과태료 : 476 0 소송비용액 등 : 613

※ 전체 자체수입항목 중 미수납이 발생한 과목에 대한 현황

## 라. 지방교육채

- 2018회계연도 **지방교육채** 세입액은 1,334억 4,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10조 9,125억 6,900만원)의 1.2%를 차지하는 바, 2017회계연도에 미발행한 지방교육채를 2018회계연도로 이월한 후 발행하여 차입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6〉 지방교육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C)		예산현액대비	
				구성비 <sup>주1</sup>	증 감 (C-A)	수납률 (C/A)
지방교육채	133,440	133,440	133,440	1.2	0	100.0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 마. 전년도이월금

- 2018회계연도 **전년도이월금** 결산액은 9,520억 7,5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10조 9,125억 6,900만원)의 8.7%를 차지하는 것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151억 8,800만원과 명시·사고이월액 4,368억 8,700만원을 수납처리한 것임

〈표 3-17〉 전년도이월금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결산(수납)액(C)		예산현액대비	
				구성비 <sup>주1</sup>	증 감 (C-A)	수납률 (C/A)
전 년 도 이 월 금	952,075	952,075	952,075	8.7	0	100.0
순 세계 잉 여 금	515,188	515,188	515,188	4.7	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436,887	436,887	436,887	4.0	0	100.0
명 시 이 월	135,315	135,315	135,315	1.2	0	100.0
사 고 이 월	301,572	301,572	301,572	2.8	0	100.0

주1. 세입결산액에 대한 구성비

### 3. 세출결산

#### 가. 세출결산 총괄

- 2018회계연도 최종예산은 10조 515억 2,2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368억 8,7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0조 4,884억 900만원으로 이는 직전회계연도(9조 9,215억 8,400만원) 보다 5.7%, 5,668억 2,500만원 증가된 것임
- 세출결산 결과 지출액은 9조 6,005억 6,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5%가 집행되어 직전회계연도(8조 9,990억 4,500만원, 90.7%) 대비 집행률은 0.8%p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21억 4,500만원(5.2%)이고, 불용액의 경우 3,457억원 (3.3%)발생되었음

〈표 3-18〉 세출예산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최종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A)	(B)	비율 (B/A)	(C)	비율 (C/A)	(D=A-B-C)	비율 (D/A)
2018	10,051,522	436,887	10,488,409	9,600,564	91.5	542,145	5.2	345,700	3.3
2017	9,596,337	325,247	9,921,584	8,999,045	90.7	436,887	4.4	485,652	4.9
증감액	455,185	111,640	566,825	601,519	0.8	105,258	0.8	△139,952	△1.6
증감률	4.7	34.3	5.7	6.7		24.1		△28.8	



○ 부분·정책사업별로 세출결산 결과를 검토하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총 지출액(9조 6,005억 6,400만원)의 93.3%, 8조 9,599억 3,000만원 지출되었고, **평생·직업교육**은 257억 600만원(0.3%) 지출되었으며, **교육일반**은 6,149억 2,800만원(6.4%)이 지출되었음

〈표 3-19〉 부분·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B)	비율 (B/A)	구성비	(C)	비율 (C/A)	(D=A-B-C)	비율 (D/A)
합 계	10,488,409	9,600,564	91.5	100.0	542,145	5.2	345,700	3.3
유아 및 초·중등교육	9,787,282	8,959,930	91.6	93.3	519,948	5.3	307,404	3.1
인적자원운용	4,548,094	4,401,687	96.8	45.8	141	0.0	146,266	3.2
교수-학습활동지원	487,354	462,966	95.0	4.8	8,637	1.8	15,751	3.2
교육복지지원	1,502,930	1,470,173	97.8	15.3	138	0.0	32,619	2.2
보건/급식/체육활동	169,160	98,712	58.4	1.0	62,937	37.2	7,511	4.4
학교재정지원관리	1,935,035	1,895,859	98.0	19.8	0	0.0	39,176	2.0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144,709	630,533	55.1	6.6	448,095	39.1	66,081	5.8
평생·직업교육	27,733	25,706	92.7	0.3	269	1.0	1,758	6.3
평생교육	27,009	25,038	92.7	0.3	269	1.0	1,702	6.3
직업교육	724	668	92.3	0.0	0	0.0	56	7.7
교육일반	673,394	614,928	91.3	6.4	21,928	3.3	36,538	5.4
교육행정일반	177,996	137,717	77.4	1.4	14,974	8.4	25,305	14.2
기관운영관리	60,095	50,761	84.5	0.5	6,954	11.6	2,380	4.0
지방채상환및리스크	431,172	426,450	98.9	4.5	0	0.0	4,722	1.1
예비비 및 기타	4,131	0	0.0	0.0	0	0.0	4,131	100.0

- 주요 정책사업의 직전 회계연도 대비 결산 증감현황을 검토하면,
-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책사업은 **교육행정일반** 사업으로 직전회계연도 대비 44.9%, 426억 9,900만원 증가된 바, 선거관리 194억 2,900만원,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160억 2,700만원, 시설사업관리 56억 7,8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25.8%, 202억 1,900만원이 증가한 바,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학교미세먼지관리 대책에 따라 학교환경위생관리가 직전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이 110.6%, 81억 2,100만원 증가되고,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이 직전회계연도보다 예산현액이 27.3%, 300억 3,1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20.3%, 1,062억 8,6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예산현액이 19.3%, 1,851억 5,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됨
  -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직전회계연도 대비 13.1%, 1,706억 3,300만원이 증가한 바, 누리과정지원비 139억 1,400만원, 학기중급식비지원비 1,535억 6,5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

〈표 3-20〉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액 전년대비 증감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증 감	
	지출액(A)	구성비	지출액(B)	구성비	금액(C=A-B)	비율(C/B)
세 출 결 산 액	9,600,564	100.0	8,999,045	100.0	601,519	6.7
교 육 행 정 일 반	137,717	1.4	95,019	1.1	42,699	44.9
보 건/급 식/체 육 활 동	98,712	1.0	78,493	0.9	20,219	25.8
학 교 교 육 여 건 개 선 시 설	630,533	6.6	524,247	5.8	106,286	20.3
교 육 복 지 지 원	1,470,173	15.3	1,299,540	14.4	170,633	13.1
지 방 채 상 환 및 리 스 료	426,450	4.5	377,936	4.2	48,514	12.8
직 업 교 육	668	0.0	598	0.0	70	11.7
학 교 재 정 지 원 관 리	1,895,859	19.8	1,795,759	20.0	100,100	5.6
평 생 교 육	25,038	0.3	23,909	0.3	1,129	4.7
기 관 운 영 관 리	50,761	0.5	49,081	0.5	1,680	3.4
인 적 자 원 운 용	4,401,687	45.8	4,282,092	47.5	119,595	2.8
교 수-학 습 활 동 지 원	462,966	4.8	472,356	5.2	△9,390	△2.0
예 비 비 및 기 타	0	0.0	15	0.0	△15	순감

## 나. 집행잔액(불용액) 관련

-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10조 4,884억 900만원)의 3.3%, 3,457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불용률 4.9%, 4,856억 5,200만원) 보다  $\Delta 28.8\%$ ,  $\Delta 1,399$ 억 5,200만원 감소하였음

〈표 3-21〉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2018	2017	2016
예 산 현 액 ( A )	10,488,409	9,921,584	8,850,089
불 용 액 ( B ) ( 불 용 률 B / A )	345,700 (3.3)	485,652 (4.9)	179,728 (2.0)
전 년 대 비 증 감 ( 증 감 률 )	$\Delta 139,952$ ( $\Delta 28.8$ )	305,925 (170.2)	45,277 (33.7)

- 불용액 발생원인을 검토하면, 전체 불용액의 91.2%(3,154억 2,300만원)가 '예산집행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소요 예산액을 과다하게 추계하거나 적극적으로 감액 편성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되는 바,
  -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중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의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 상황을 수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2〉 불용액 발생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용액	발 생 원 인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 산 집행잔액
2018	345,700 (100.0)	25,721 (7.5)	307 (0.1)	4,249 (1.2)	315,423 (91.2)
2017	485,652 (100.0)	325,507 (67.0)	0 (0.0)	4,951 (1.0)	155,194 (32.0)
2016	179,728 (100.0)	19,797 (11.0)	0 (0.0)	8,193 (4.6)	151,738 (84.4)

# (1)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

○ 불용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을 검토한 결과,

〈표 3-23〉 불용액 50억원 이상 발생 사업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예산현액 (A)	불용액(B)			직전 회계연도(2017)			소관부서
		비율 (B/A)	구성비 <sup>주1</sup>	예산현액 (C)	불용액(D)			
					비율 (D/C)			
교 인 건 원 비	3,735,111	95,473	2.6	27.6	3,567,553	20,118	0.6	예 산 당 관
학 교 시 설 교육환경개선	688,993	55,980	8.1	16.2	568,909	35,034	6.2	교 육 시 설 안 전 과
계 약 제 교 원 인 건 비	247,112	23,806	9.6	6.9	222,016	8,440	3.8	예 산 당 관
학 교 운 영 비 지 원	746,756	21,980	2.9	6.4	683,498	4,135	0.6	예 산 당 관
지 방 공 무 원 인 건 비	474,226	17,780	3.7	5.1	454,762	7,002	1.5	예 산 당 관
인 건 비 재 정 결 함 지 원	1,120,833	16,436	1.5	4.8	1,065,183	10,263	1.0	학 교 지 원 과
학 기 중 급 식 비 지 원	556,074	9,616	1.7	2.8	400,912	8,020	2.0	체 육 건 강 과
선 거 관 리	32,038	9,429	29.4	2.7	3,180	0	0.0	총 무 과
시 설 사 업 관 리	38,810	8,431	21.7	2.4	27,092	2,619	9.7	교 육 시 설 안 전 과
교 육 급 여 지 원	45,397	6,789	15.0	2.0	52,846	12,958	24.5	참 여 협 력 담 당 관
학 교 신 증 설	285,963	5,868	2.1	1.7	242,901	19,662	8.1	학 교 지 원 과
누 리 과 정 지 원	611,118	5,451	0.9	1.6	591,803	50,288	8.5	유 아 교 육 과

주1. 총 불용액(3,457억원) 대한 해당 세부사업 불용액 비율

- 예산담당관 소관 **교원인건비·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4조 2,093억 3,700만원 중 2.7%, 1,132억 5,3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전체 불용액(3,457억원)의 32.7%에 해당되며, 불용률은 직전회계연도 보다 2.0%p, 861억 3,300만원 증가한 것임
- 동 불용액 발생의 주된 사유는 교원·지방공무원의 휴직 증가 등에 따라 예산편성 시 인원(49,781명)과 집행인원(49,414명)의 차이(△367명)가 있고,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예산편성 시 인원(1,292명)과 집행인원(1,090명) 간 차이(△202명)가 발생됨에 따라 보수, 수당 등이 미집행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됨

〈표 3-24〉 교원인건비·지방공무원 인건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급여종류	본예산액 (A)	추경증액 (B) <sup>주1</sup>	변경 사용증감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잔액	
							(F=D-E)	예산현액 대비 비율 (F/D)
합 계		4,064,012	145,525	△200	4,209,337	4,096,084	113,253	2.7
교원 인건비	소 계	3,597,656	137,680	△225	3,735,111	3,639,638	95,473	2.5
	보 수	2,920,515	41,060	0	2,961,575	2,925,383	36,192	1.2
	직급보조비	8,606	0	0	8,606	8,248	358	4.2
	법정부담금	573,297	52,198	0	625,495	591,377	34,118	5.5
	명예퇴직수당	57,070	44,422	0	101,492	77,947	23,545	23.2
	맞춤형복지비	38,168	0	△225	37,943	36,683	1,260	3.3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급여종류	본예산액 (A)	추경증액 (B) <sup>주1</sup>	변경 사용증감 (C)	예산현액 (D=A+B+C)	집행액 (E)	집행잔액	
							(F=D-E)	예산현액 대비 비율 (F/D)
지 방 공무원 인건비	소 계	466,356	7,845	25	474,226	456,446	17,780	3.7
	보 수	370,530	3,053	0	373,583	362,037	11,546	3.1
	직급보조비	11,926	0	0	11,926	11,641	285	2.4
	법정부담금	74,631	4,792	0	79,423	73,922	5,501	6.9
	명예퇴직수당	3,720	0	0	3,720	3,383	337	9.1
	맞춤형복지비	5,549	0	25	5,574	5,463	111	2.0

주1. 추경 증액 사유

▶ 교원 인건비

- 보수 410억 증가 : 교원 시간외근무수당(추가지급분) 102억, 상반기 교원명예퇴직수당 308억(예산변경)
- 명예퇴직 및 법정부담금 966억 증가 : 하반기 명예퇴직 수당 반영

▶ 지방공무원 인건비

- 보수 및 법정부담금 78억 증가 : 5급 성과연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지방공무원 학교운영수당 신설에 따른 소요액 편성

- 교원인건비·지방공무원인건비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제1회 추경예산('18. 6.29. 의결)을 통해 보수 ·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법정부담금 등에 대한 부족분 1,455억 2,500만원을 증액한 것이나,
- 결산 결과, 동 사업의 집행잔액(1,132억 5,300만원)이 추경증액조정분(1,455억 2,500만원)의 77.8% 규모로 검토되며, 이는 결국 추경을 통해 증액편성된 추가재원 대부분이 불용되는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교원인건비의 경우, 하반기 명예퇴직인원 예산편성 시 추계 인원(422명)과 집행인원(220명)의 차이(△202명)로 인해 명예퇴직수당, 법정부담금의 불용액이 576억 6,300만원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 인건비의 경우 교원, 지방공무원의 휴직, 휴가, 파견, 퇴직 등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산소요액 산정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교육청의 세출구조 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세출 예산의 60% 규모를 점하고 있어, 비록 불용률이 낮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발생하는 불용액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인건비 예산 산정 시 정밀도를 높이고, 집행액 관리 등을 통해 한정된 서울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은 예산현액 6,889억 9,300만원의 8.1%인 559억 8,0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전체 불용액(3,457억원)의 16.2%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됨
-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면 총 불용액(559억 8,000만원)의 66.6%, 373억 2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이고, 총 불용액(559억 8,000만원)의 33.4%, 186억 7,800만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표 3-25〉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사업 불용액 발생원인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원인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2018	688,993	55,980 (100.0)	8.1	18,678 (33.4)	0 (0.0)	0 (0.0)	37,302 (66.6)
2017	568,909	35,034 (100.0)	6.2	2,228 (6.4)	0 (0.0)	34 (0.1)	32,772 (93.5)

※ ( )는 불용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별 비율임

○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예산현액 중 5억원 이상 불용된 주요 사례를 검토하면,

- **신남초 교사동 리모델링** 사업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설계공모, 설계용역 추진이 지연되어 명시이월된 사업이나, '18년 11월 사업추진계획이 변경(리모델링→개축)되어 예산현액 17억 8,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신정초 석면텍스 전면교체** 사업은 '18년 6월 공사 설명회 실시 이후 학부모 민원이 확산됨에 따라 학교장 요청으로 사업이 중지되어 예산현액 18억 700만원의 64.6%, 11억 6,7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청덕초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18년 6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학교 요청에 따라 사업을 취소('18년 10월)하여 예산현액 16억 6,800만원의 98.6%인 16억 4,500만원이 불

## 용된 것임

- **미림여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사업이나 사업예산 부족은 물론 공사 추진 중 학생·교직원 민원 발생 등의 사유로 사업을 취소하여 예산현액 7억 4,3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표 3-26〉 계획변경 및 취소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사유	비고
				비율		
강서양천	신남초 교사동리모델링	1,780	1,780	100.0	사업추진계획 변경(리모델링→개축) 따른 취소	명시이월
강서양천	신정초 석면텍스 전면교체	1,807	1,167	64.6	석면공사 중지 및 타절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명시이월 본예산
성북강북	청덕초 석면해체 제거작업	1,668	1,645	98.6	학교구성원 의견,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취소	본예산 1회추경
동부	답십리초 석면해체 제거작업	1,549	1,525	98.4	석면제거공사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 따른 학교의 사업보류 요청에 의해 사업 미시행	본예산 1회추경
강동송파	상일미디어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1,058	1,058	100.0	석면제거공사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 따른 학교의 취소요청으로 사업 미시행	본예산 1회추경
동작관악	봉현초 석면해체 제거작업	914	891	97.4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학교의 사업 취소요청으로 사업 미시행	본예산 1회추경
동작관악	신림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740	725	97.9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에 따른 학교의 취소요청으로 사업 미시행	본예산 1회추경
강동송파	상일여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824	824	100.0	석면공사에 대한 불안감 확산에 따른 학교의 취소요청으로 사업 미시행	본예산 1회추경
동작관악	미림여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743	743	100.0	사업예산부족, 민원발생 우려에 따른 학교의 취소요청으로 사업 미시행	본예산 1회추경

- 예산담당관 소관 **계약제교원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2,471억 1,200만원 중 238억 600만원이 불용된 바,
  -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본예산 편성인원(4,464명)과 집행인원(4,023명)의 차이(△441명)가 발생하여 예산 현액의 9.6%, 238억 6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연간 계약제교원 인건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 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최근 3년간 계약제교원 인건비 불용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요 예산 추계에 반영함으로써 예산편성의 정밀도가 확보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7〉 최근 3년간 계약제교원인건비 불용률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산정 인원	예산편성(A)	4,464	4,361	3,850
	실집행인원(B)	4,023	4,127	4,137
	증감(A-B)	441	234	△287
예산현액①		247,112	222,017	203,999
지출액②		223,306	213,576	200,338
집행잔액(③=①-②)		23,806	8,441	3,661
불용률(③/①)		9.6	3.8	1.8

- 예산담당관 소관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7,467억 5,600만원 중 219억 8,000만원이 불용된 바, 직전회계연도 대비 2.3%p, 178억 4,5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운영비지원** 사업은 ① 학교기본운영비 ② 학교기타운영비 ③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항목으로 구성된 바, ① 학교기본운영비는 62억 100만원 ② 학교기타운영비 39억 3,200만원, ③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118억 4,700만원이 불용처리 된 것임
- 이 중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가 불용된 것은 ① 정규직전환에 따라 기 편성된 인건비 100억 7,500만원 전액 불용된 것이며 ② 최저임금 인건비 보전액도 예산현액 56억 8,500만원 중 17억 7,200만원의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28〉 학교운영비지원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세부항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합 계	747,756	724,776	21,980	2.9
학 교 기 본 운 영 비	583,328	577,127	6,201	1.1
학 교 기 타 운 영 비	97,177	93,245	3,932	4.0
교육공무직원처우개선비	66,251	54,404	11,847	17.9

- 학교지원과 소관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예산현액(1조 1,208억 3,300만원) 중 164억 3,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예산 편성 시 인원(17,125명)과 집행인원(17,037명)의 차이(△88명)가 발생하여 인건비와 연동한 맞춤형복지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과 명예 퇴직수당 집행잔액 등으로 164억 3,600만원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인원 변동을 예측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것이나, 직전회계연도부터 불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집행가능한 재원을 우선편성하고 수요에 따라 추경예산으로 추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체육건강과 소관 **학기중급식비지원** 사업은 예산현액(5,560억 7,400만원)의 1.7%인 96억 1,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지원과 학기중평일중식지원 사업 예산편성 시 인원과 집행인원에 차이가 발생되어 96억 1,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총무과 소관 **선거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20억 3,800만원 중 29.4%, 94억 2,9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관리 경비 통보에 의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 규모가 전회 보다 증가한 반면 실제 집행액은 감소하고 소송경비도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 교육시설안전과 소관 **시설사업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388억 1,000만원 중 21.7%, 84억 3,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공공 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관리 용역 신규 추가 업무처리 방안에 의해 2018년 하반기 추가 집행 예정이었던 총 69교에 대한 학교시설관리용역을 미집행한 것이 주된 사유로 검토됨

- 당시 용역·과건 근로자 직접고용 전환대상, 임금체계, 채용방식 미확정으로 학교시설관리 사업의 추진여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감액 조정 사유가 명확한 예산을 추경을 통하여 감액조정하였다면 불용액 발생 규모가 축소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453억 9,700만원의 15.0%인 67억 8,900만원이 불용된 바, 교육부의 교육급여 수급자 인원 추계 방식으로 인해 매년 과다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나,
-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도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에 편성된 교육청의 자체재원분 편성 규모를 조정한 결과, 불용률이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업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과다한 불용액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규모 조정을 통한 불용액 축소 방안을 검토하여 교육부에 개선 건의하는 것은 물론 당해연도 사업추진 여건과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예상되는 불용액에 대해 감추경하는 등 추가적인 불용액 감소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학교지원과 소관 **학교신·증설**은 예산현액 2,859억 6,300만원의 2.1%, 58억 6,8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을 사유로 하여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표 3-29〉 학교신·증설 사업 불용액 발생원인별 구분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발생원인			
			비율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2018	285,963	5,868 (100.0)	2.1	0 (0.0)	0 (0.0)	0 (0.0)	5,868 (100.0)
2017	242,901	19,662 (100.0)	8.1	14,961 (76.1)	0 (0.0)	0 (0.0)	4,701 (23.9)

※ ( )는 불용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원인별 비율임

○ 학교신·증설 사업의 주요 불용 사례를 검토하면 **가칭)가락일초·중  
통합학교 신설**은 '18년 2월 설계용역 완료 후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 '18년 4월 중 공사계약(2019년 3월 준공)을 체결한 바, 공  
사업찰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및 준공정산 등으로 예산현액  
(340억 8,400만원)의 7.7%, 26억 2,0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가칭)산빛초 및 가칭)고이초 신설 설계공모 포상금 및 설계비**는  
'17년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교 설립시기 조정을 사유로  
가칭)산빛초의 신설이 미승인된 바, 위례신도시 입주시기가 확정  
되지 않아 '18년도에는 중앙투자심사에 재상정되지 못함에 따라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추진이 불가하여 예산현액 11억 5,900  
만원의 80.7%, 9억 3,5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가칭)신길중 토지매입**은 신길7구역 재건축조합이 토지를 매각하  
면서 학교부지 조성을 위한 절토공사비를 부담하기로 '18년 11  
월 서울시교육청과 합의함에 따라, 토지매입비 지출금액이 감소



하여 예산현액(186억 400만원) 중 3.6%, 6억 6,2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가칭)천이초 신설**은 지난 '17년 10월부터 신설 공사를 추진하던 중 '18년 1월 「교육공간 혁신 시범학교 구축」 학교로 선정됨에 따라 창호 및 바닥재 시공에 대한 설계가 변경되어 예산현액 206억 7,000만원의 1.7%, 3억 4,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내곡중 신설**(불용액 2억 9,300만원), **가칭)녹원초 신설**(불용액 1억 4,900만원), **새솔초 교실증축**(불용액 1억 1,500만원)은 공사 총액 입찰에 의한 낙찰차액으로 불용이 발생되었고, 준공 시 관급자재, 보험료 및 제경비 등 정산에 따라 소액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표 3-30〉 학교신·증설 사업 주요 불용 내역(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 현액	불용액		구체적 발생사유
					비율	
강 동 송 과 교육지원청	가칭)가락일 초 중 통 합 학 교 신 설	건설비	34,084	2,620	7.7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학 지 원 과	가칭)산빛초 및 가칭)고이초 신설 설계공모 포상금 및 설 계 비	보전금 건설비	1,159	935	80.7	가칭)산빛초 신설 중앙투자심사 미승인으로 사업추진 불가하여 예산불용
교 육 과 재 정 과	가칭)신길중 토 지 매 입	토 지 매입비	18,604	662	3.6	사업 시행자(신길7구역 재건축조합) 가 토지조성비를 부담함에 따른 집행잔액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 과목	예산 현액	불용액		구체적 발생사유
					비율	
남 부 교육지원청	가칭)천이초 신 설	건설비	20,670	346	1.7	신설공사와 교육공간 혁신 시범 학교 구축사업 병행 추진으로 관급자재예산 중 미집행액 발생
강 남 서 초 교육지원청	내 곡 중 신 설	건설비	7,878	293	3.7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서 부 교육지원청	가칭)녹원초 신 설	건설비	11,940	149	1.3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동 부 교육지원청	새솔초 교실 증 축	건설비	2,962	115	3.9	낙찰차액, 준공정산 등 집행잔액

○ 유아교육과 소관 **누리과정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6,111억 1,800만원의 0.9%인 54억 5,100만원이 불용된 바,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나, 불용액의 규모만을 비교하면 54억 5,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로 진출하여 추진되는 부분이 있어 교육청이 최소 필요액 편성 후 추경으로 증액한다 하여도 서울시의 추경이 후속되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불용액 감소 방안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 지난 2017회계연도에서 2018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은 4,368억 8,700만원이며, 이 중 241억 9,100만원(5.5%)이 불용되었음

〈표 3-31〉 전년도 이월사업 중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년도이월액 (‘17→‘18)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18→‘19)	불용액	
					비율
합 계	436,887	333,013	79,683	24,191	5.5
명시이월	135,315	39,079	79,683	16,553	12.2
사고이월	301,572	293,934	0	7,638	2.5

- 전년도 이월사업 중 이월액 전액(100%)이 불용된 사업은 21건, 40억 1,900만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월사업비 불용액(241억 9,100만원)의 16.6%로 검토됨

- **용두초 친환경학교 운동장 조성**은 2017년도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되었으나, 2018년 4월, 자치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예산현액 3억 1,2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청운초 석면텍스 전면제거**는 2017년 12월 계약체결 후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2018년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결과에 의해 석면제거공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산현액 2억 3,8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표 3-32〉 전년도 이월사업 중 이월액 전액(100%) 불용된 주요 사업

(단위 : 백만원, %)

이월 구분	사업내역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발생사유	소관 부서
					비율		
명시 이월	신 남 초 교사동리모델링	1,780	0	1,780	100.0	사업변경(리모델링→개축)에 따른 예산 미집행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명시 이월	홍 과 초 냉난방개선공사	485	0	485	100.0	석면공사와 관련되어 학교 요청으로 사업 추진 취소	동 부 교육지원청
명시 이월	용 두 초 친 환경 학교 운동장 조성	312	0	312	100.0	자치구(동대문구) 지원 인조 잔디교체 사업 추진으로 집행 불필요	동 부 교육지원청
사고 이월	청 운 초 석면 텍스 전 면 제거	238	0	238	100.0	석면공사의 안전성에 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학교 요청으로 사업 추진 취소	중 부 교육지원청
사고 이월	신 방 학 초 천 정 텍스 전 면 제거	235	0	235	100.0	석면공사에 관한 안전성 우려로 학교관계자 의견, 학부모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취소	북 부 교육지원청
사고 이월	창 경 초 교 사 외 부 창 개 선	190	0	190	100.0	석면공사와 관련되어 학교 요청으로 사업 추진 보류	북 부 교육지원청
명시 이월	홍 과 초 냉 난 방 개 선 전 기 공 사	179	0	179	100.0	석면공사와 관련되어 학교 요청으로 사업 추진 보류	동 부 교육지원청
사고 이월	동 일 초 천 장 텍스 석 면 제 거	129	0	129	100.0	석면공사에 관한 안전성 우려로 학교관계자 의견,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연기	북 부 교육지원청

(3)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시설사업비 (세부사업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 **용화여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예산현액 2억 500만원) 및 **영란여중 석면해체 제거작업**(예산현액 1억 1,200만원)은 2018년 2월 중 천정텍스 석면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사업비가 재차 편성되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시설사업비 예산을 편성 시 사전 조사한 사업장의 환경변화 여부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세종고 본관동 연결통로설치**(예산현액 1억 800만원)는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및 가설계 추진 과정에서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 설치가 학교 건물의 구조적 여건 상 부적합하고, 건물 구조보강 및 안전진단을 위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사업을 취소하여 불용액이 발생된 것으로,
  - 노후 건물의 경우, 시설비 편성에 앞서 진단용역비를 편성하여 타당성 조사 후 본 공사비를 편성하는 등의 합리적 판단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성내중 본관 화장실개선 타일개선**(예산현액 1억 2,700만원)은 당초 부분개선 공사로 진행 중 학교 측의 전면 보수 요구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불용된 것임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례에서 검토되듯이 업무추진 일정 상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예산편성 시 집행계획을 포함한 사업장 환경변화 여부 등의 사전 준비가 소홀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바,

- 예산편성 시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미집행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소액이라도 적극 감액하여 타 사업으로 재원배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 3-33〉 예산현액(1억 이상)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 부서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역	예산 현액	불용액	예산 편성
1	강 서 양 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신남초 교사동 리모델링	1,780	1,780	명시이월
2	강 동 송 파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상일미디어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958	958	본예산
3	강 동 송 파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상일여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708	708	본예산
4	동 작 관 악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미림여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641	641	본예산
5	동 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홍파초 냉난방개선공사	485	485	명시이월
6	중 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원효초 본관 석면해체 제거작업	360	360	본예산
7	동 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용두초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	312	312	명시이월
8	중 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남산초 본관 석면해체 제거작업	300	300	본예산
9	강 서 양 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등서초 석면해체 제거작업	278	278	본예산
10	강 서 양 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 경 개 선	신정초 석면해체 제거부족분	262	262	본예산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편성
11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상일여중 석면해체 제거작업	251	251	본예산
12	중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학교환경개선	청운초 석면텍스 전면교체	238	238	사고이월
13	북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신방학초 천정텍스 전면교체	235	235	사고이월
14	성북강북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청덕초 석면해체제거 부족분 (정밀청소, 잔재물조사, 조명교체)	228	228	1회추경
15	북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용화여고 석면해체 제거작업	205	205	본예산
16	동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답십리초 석면해체 제거부족분 (정밀청소, 잔재물조사, 조명교체)	201	201	1회추경
17	북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창경초 교사의외부창 개선	190	190	사고이월
18	동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홍파초 냉난방개선 전기공사	179	179	명시이월
19	북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동일초 천장텍스석면제거	129	129	사고이월
2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봉현초 석면해체제거 부족분 (정밀청소, 잔재물조사, 조명교체)	127	127	1회추경
21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성내중 본관 화장실 타일개선	127	127	본예산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예산편성
22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방화초 석면해체 제거작업, 석면해체제거 부족분	122	122	본예산
23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사립학교 2017년 LED조명기구 임차비	119	119	본예산
24	북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창림초 석면해체 제거부족분 (정밀청소, 잔재물조사, 조명교체)	117	117	1회추경
25	강동송파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상일여고 석면해체 제거부족분 (정밀청소, 잔재물조사, 조명교체)	116	116	1회추경
26	동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영란여중 석면해체 제거작업	112	112	본예산
27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서울세종고 본관동 연결통로설치	108	108	본예산
28	동부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면중초 증연창교체	103	103	본예산
29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신림고 석면해체 제거부족분 (정밀청소, 잔재물조사, 조명교체)	102	102	1회추경
30	동작관악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미림여고 석면해체 제거부족분 (정밀청소, 잔재물조사, 조명교체)	102	102	1회추경



## 다.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8회계연도는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라 총 9건, 109억 1,2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음

〈표 3-34〉 회계연도별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8	2017	2016	2015	2014
발생건수	9	17	0	79	1
이 체 액	10,912	23,670	0	462,902	39,895

-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체를 검토하면
  - '18년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는 교육공간기획추진단이 교육행정국에 과단위로 신설된 바,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예산 102억 5,400만원이 교육공간기획추진단으로 이체되었음

- '17년 12월 시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 동안 분산되어 운영되던 시설사업의 담당부서를 교육시설안전과로 일원화하고, 일부 부서의 소관업무를 변경하여 2개 세부사업 5억 200만원을 교육시설안전과로 이체 하였고
- '18년 10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치원 평가 업무가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되어 '학교평가관리' 사업예산 1억 5,600만원을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이체 처리의 경우에도 회계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제도 해설 사례집」에 따르면 예산의 이체는 예산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직무권한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직 관련 규칙 개정은 직무권한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규칙은 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한 것이기에, 예산의 이체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건의 이체처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표 3-35〉 2018회계연도 이체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이체부서		건수	이체액	비고
준 부서	받은부서			
합 계		9	10,912	
소 계(1차)		8	10,756	1차 (1. 9.)
학 교 지 원 과	교육공간기획추진단	4	138	
교육시설안전과	교육공간기획추진단	2	10,116	
체 육 건 강 과	교육시설안전과	2	502	
소 계(2차)		1	156	2차 (10. 8.)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1	15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이체는 사업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회계연도가 이미 상당기간 경과된 시점에서 예산의 이체가 발생되면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사업을 이관받은 부서도 사업준비 및 추진기간에 물리적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바,
- 조직개편 등을 통해 행정조직을 재구조화할 경우에는 조직 개편 대상 부서에서 기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라.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할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18년도 예산서 중 「예산총칙」 제8조는 (1) 공무원 보수, (2) 기타직 보수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3)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4) 재해대책비, (5) 반환금, (6) 학교신설비에 한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8회계연도의 경우, 이용이 발생된 바 없음

## 마.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임
- 2018회계연도의 경우, 총 71건, 102억 2,700만원이 전용된 바, 이는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10조 4,884억 900만원)의 0.1%에 해당함

〈표 3-36〉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 계 연 도	2018	2017	2016
건 수	71	69	48
전 용 액 (예산현액대비 비율)	10,227 (0.1)	48,209 (0.5)	12,161 (0.1)

- 2018회계연도 전용사례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행정안전부의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표 3-37〉 예산 전용의 제한<sup>주1</sup>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 단, 차입금원금상환과 차입금이자상환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 시설비 및 부대비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 사용은 가능

※ 주1. 행정안전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172

- 다만,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적용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는 제도라 하나
  - 예산편성 시 미리 고려하지 못한 편성오류를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이후 수정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인 바, 예산의 전용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전용발생 건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정밀성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용을 통해 대규모 부족재원을 확보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법적 절차가 준수된 것이라 하여도 전용이 특정사업의 수행 수단을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임시적 처방으로 사료된다는 점에서 전용을 통해 대규모 재원을 변경하기 보다는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전용사례 중 **학교운영비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서 63억 4,100만원이 전용되어 총 전용액(102억  
2,700만원)의 62.0%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됨

〈표 3-38〉 10억원 이상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전용일자
			감	증		
합 계			△6,341	6,341		
학 교 운 영 지 원	복 리 후 생 비	3,560		3,158	2018년도 교육공무직 맞춤형 복지포털시스템 사용에 따른 목간 예산 변경	4.27.
	학 교 회 계 전 출 금	58,795	△3,158			
교 육 행 정 기 록 물 리 관	유형자산	-		542	차세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KERIS에 위탁진행중이나, 기계 장치 및 소프트웨어 취득을 위해 목간 예산 변경	10.16.
	무형자산	-		611		
	운 영 비	3,024	△1,153			
특 별 교 육 재 정 수 요 지 원	학 교 회 계 전 출 금	6,120		220	공사립학교특별지원 예산잔액이 부족하여 향후 소요액을 반영 하기 어려움에 따라 목간 예산 변경	10. 5.
	경 상 교 육 지 원 사 업	2,043	△220			
	학 교 회 계 전 출 금	6,340		751	공사립학교특별지원 예산잔액이 부족하여 향후 소요액을 반영 하기 어려움에 따라 목간 예산 변경	11. 8.
	경 상 교 육 지 원 사 업	1,823	△751			
	학 교 회 계 전 출 금	7,091		545	공사립학교특별지원 예산잔액이 부족하여 향후 소요액을 반영 하기 어려움에 따라 목간 예산 변경	12. 7.
	경 상 교 육 지 원 사 업	1,071	△545			
	학 교 회 계 전 출 금	7,636		514	공사립학교특별지원 예산잔액이 부족하여 향후 소요액을 반영 하기 어려움에 따라 목간 예산 변경	12.24.
경 상 교 육 지 원 사 업	527	△81				
투 자 교 육 지 원 사 업	1,000	△433				

○ 개별 전용사례 중 노사협력담당관 소관 **학교운영비지원**는 **교육공무직처우개선비(맞춤형복지)**로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 업무 처리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과목별 예산을 전용한 것임



- 그러나 동 개선 방안은 서울시교육청의 본예산편성 기간 중인 '17년 10월 수립된 바, 특히 에듀과인시스템의 예산 입력 전으로 우리 의회에 '18년도 본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이었다는 점에서, 집행 가능한 적정 예산과목(복리후생비)으로 편성 가능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결과를 추후 전용으로 희석시킨 것으로 사료됨
- 정책·안전기획관 소관 **교육행정기록물관리** 사업은 **차세대 교육정보 통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당초 예산과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에 위탁운영하기 위해 운영비(위탁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 소요예산 중 기계장치(5억 4,200만원)와 소프트웨어 취득(6억 1,100만원)의 경우 적정 예산편성과목은 유형·무형 자산일 수밖에 없어, '18년 10월 해당 통계목을 신설하여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동 사업비는 전용 후 집행되지 않고 '19년 예산으로 전액 명시이월된 바, 예산과목의 오류편성은 전용보다 추경을 통해 세출예산을 경정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은 물론, 전용한 사업비 전액 또한 명시이월 되었다는 것은 사업추진의 시급성마저 확보하지 못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예산담당관 소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회계연도 중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4회에 걸친 전용을 통해 과목별 예산을 조정한 것임

- 다만, 동 전용의 경우, 전용액이 20억 3,000만원으로 총 전용액 (102억 2,700만원)의 19.8%에 해당되는 바, 매년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39〉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 계 연 도		2018	2017	2016
건	수	4	2	2
전	용 액 (총 전용액대비 비율)	2,030 (19.8)	2,168 (4.5)	1,245 (10.2)
목	학 교 회 계 전 출 금	2,030	2,168	1,245
	경 상 교 육 지 원 사 업	△1,597	△1,549	△893
	투 자 교 육 지 원 사 업	△433	△619	△352

○ 참여협력담당관 소관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17학년도 교육급여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산을 전용한 바,

- 교육급여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은 매년 다음연도 추경예산에 편성 후 집행하는 것으로, '18년도 제1회 추경시 교육급여지원비(보조금반환) 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족액이 발생하여 전용을 통해 예산을 추가 확보한 것임
- 동 전용 건의 경우, 전용과 관련된 회계적 하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결과적으로 제1차 추경('18. 6월)시 반납금의 과소편성 오류를 전용을 통해 희석시킨 것으로 향후에는 예산 추계의 정밀

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과소편성에 따라 전용되는 사례는 최소화 되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0〉 교육급여지원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전용일자
			감	증		
교육급여	학교회계전출금	74	△74		'17학년도 교육급여지원사업 잔액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등 반납을 위한 전용	8.2.
	예비비및기타	1,212		74		

- 학생생활교육과 소관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은 '16년도부터 초등 안심알리미 서비스 요금 납부 주체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8회계연도 동 사업비 예산과목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소요 예산액 106억원을 운영비로 전용한 것임
- 동 전용 건은 해당 세출과목에 대한 이해 부족의 결과로 사료되나 '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동일 사항이 지적된 바, 향후에는 적절한 세출과목으로 편성하여 불필요한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1〉 학교폭력예방지원 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목	예산액	전용액		사 유	전용일자
			감	증		
학교폭력예방지원	학교회계전출금	4,274	△106		'16년 이후 개통된 초등학교 안심서비스 요금은 교육청에서 직접 납부하였으나 전액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오류 입력	5.16.
	운영비	711		106		

## 바. 명시이월 관련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명시이월은 당초 310건, 1,840억 6,100만원을 승인한 것이나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308건, 1,835억 9,800만원이 실제 명시이월된 것임

〈표 3-42〉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명 시 이 월				
		건수	명시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비율 (B/A)	증감률		
2018	10,488,409	308	183,598	1.7	48,284	35.7
2017	9,921,584	223	135,314	1.3	27,877	25.9
2016	8,850,089	104	107,437	1.2	27,887	35.1

- 명시이월의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사업추진기간 부족이 전체 명시이월액(1,835억 9,800만원)의 83.3%, 1,529억 1,100만원, ②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 4.9%, 89억 6,800만원, ③ 사업비 부족 7.1%, 129억 7,700만원, ④ 기타 4.7%, 87억 4,200만원으로 검토됨

〈표 3-43〉 발생사유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총 계	사업추진 기간부족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	사업비 부 족	기타
건 수	308	177	17	41	73
이월액	183,598	152,911	8,968	12,977	8,742
비율	100.0	83.3	4.9	7.1	4.7

-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177건, 1,529억 1,100만원)은 학교 화장실개선,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등 학교시설환경개선사업(106건, 1,116억 1,300만원)과 회계연도 말인 10~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71건, 412억 9,800만원)등으로 확인됨

〈표 3-44〉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단위 : 건, 백만원)

재원구분	사 업 명	건수	명시이월액
합 계		177	152,911
광역자치단체 전 입 금	학교화장실 개선	1	78
자 체 재 원	학교 강당 겸 체육관 증축,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등	105	111,535
특별교부금	교육사업비 및 지역교육현안수요 등	71	41,298

-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에 따라 발생된 명시이월(17건, 89억 6,8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요사업을 검토하면,

-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청사증축 시설비**는 기존 청사를 수직으로 증축하기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하던 중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증축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건축 시공방법 재검토, 입주민과의 협의 대책 마련 등의 사유로 '18년 9월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계약 추진을 보류함에 따라 예산현액 17억 5,800만원 전액이 명시이월된 것임
- **등현초 급식실및학생식당 신증축과 강당검체육관 시설비**는 '17년 12월부터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통합 추진에 따른 설계용역 진행 중 학교에서 특별교실 증축을 추가 요청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설계 검토, 재정투자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해 '18년 7월부터 5개월간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12월에 설계용역을 재개하였으나, 연도 내 공사계약 등 사업추진이 불가('19년 3월 설계용역 완료 예정)하여 **급식실및학생식당 신증축** 7억 1,600만원, **강당검체육관 시설비** 12억 7,1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 **방화초 강당검체육관(설계공모, 설계비 및 시설비)**은 당초 정보관을 철거한 후 강당 검 체육관을 증축하려고 하였으나, '18년 10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정보관 철거를 재검토하도록 심의 의결됨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예산현액 12억 1,2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임
- **이수중 체육관 증축공사**는 설계용역 추진 중 주민들이 체육관 증축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18년 7월 설계용역이 중지되었고, 증축위치 변경(주택가인접 정문 측→공원인접 후문 측)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확보 문제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

하여 예산현액 14억 1,900만원의 중 12억 3,100만원이 명시  
이월된 것임

〈표 3-45〉 사업추진 시 장애발생으로 명시이월된 내역(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역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교육지원청 시설관리	강동송과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시설비	1,758	인근 아파트입주민 반대로 인한 협의기간 지연으로 연도 내 집행 불가능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현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716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공유 재산심의 절차 진행 및 설계지연으로 연도 내 공사계약 불가능
학교시설 환경개선	대진고 <sup>주1</sup> 담방음벽 설치	110	방음벽제거공사 설계검토 중 석면이 검출 되어 석면제거사업 예산확보 후 추진 예정
학교시설 증개축	등현초 강당 검 체육관 시설비	1,271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공유 재산심의 절차 진행 및 설계지연으로 연도 내 공사계약 불가능
	이수중 체육관 증축공사	1,231	지역주민 민원 발생에 따른 학교장 요청으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어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능
	방화초 설계비, 설계공모 보상비 및 시설비	1,212	공유재산 심의 결과, 추가 검토 및 재심의 필요로 연도 내 추진 불가능
	신곡초 <sup>주2</sup> 강당 검 체육관 시설비	1,181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연도 내 공사 계약 불가능
	양동초 <sup>주3</sup> 강당 검 체육관 시설비	1,102	사업물량 증가에 따른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진행으로 연도 내 공사 계약 불가능
	동원초 <sup>주4</sup> 설계비, 설계공모 보상비	110	양원지구 신설학교 설립 결정에 따른 동원초 수용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으로 사업추진 보류

주1. (북부) 대진고 : 노원구 공릉로62가길 47(하계동)

주2. (강서양천) 신곡초 : 강서구 등촌로13가길 42-14(화곡동)

주3. (강서양천) 양동초 : 강서구 오목로23길 24(신정동)

주4. (동부) 동원초 : 중랑구 송림길 114(망우동)

○ 사업비 부족 등 기타 사유 발생에 따라 명시이월(114건, 217억 1,900만원)된 사업을 검토하면,

- **성서초 급식실및학생식당 증축**은 체육관 증축 사업과 병행 추진 하여 '18년 5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병설유치원 신설 사업 계획이 추가 수립되면서 설계 재검토,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체육관 증축 및 병설유치원 증설 예산도 편성되지 않아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예산현액 13억 7,70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임
-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외 3개 교육지원청의 **공립학교 2018년 LED조명기구임차비**는 교육시설안전과의 「LED 렌탈사업 추진 계획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명시이월된 것임
- **한강중 특별교실 증축공사**는 2018년 제1회 추경(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어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한 결과, 추가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부족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기 확보된 예산은 집행 보류함에 따라 8억 3,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임
- **아주중 교사 냉난방개선**은 사업 추진 시기를 2019년도 석면텍스공사 예산 편성 이후로 조정함에 따라 5억 2,7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임



〈표 3-46〉 사업비 부족 등 기타 사유로 명시이월된 내역(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사업내역	명시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성사중 강당검체육관	2,855	사업예산 부족, 설계협약에 장시간 소요되어 연도 내 집행 불가능	본예산
성서초 급식실및학생식당 증축	1,377	사업물량 증가로 설계 협의, 재정투자심의 추진 중, 사업예산 미확정 단계임에 따라 연도 내 사업추진 불가능	본예산
(강서양천) 공립학교 LED 조명기구 임차비	917	교육시설안전과의 “LED렌탈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1년 연장	본예산
(서부) 공립학교 LED 조명기구 임차비	867	교육시설안전과의 “LED렌탈사업 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1년 연장	본예산
한강중 특별교실 증축공사	830	설계용역 추진결과 추가 예산이 필요하여 부족예산 확보 시까지 사업추진 보류	1회추경
(강동송파) 공립학교 LED 조명기구 임차비	795	교육시설안전과의 “LED렌탈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1년 연장	본예산
(성북강북) 공립학교 LED 조명기구 임차비	545	교육시설안전과의 “LED렌탈사업 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기간 1년 연장	본예산
아주중 교사냉난방 개선	527	2019년도 본예산에 석면텍스 공사비 반영된 이후 겨울방학 중 사업추진 예정	본예산

○ 명시이월은 의회의 사전의결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이월된 예산은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여도 타 사업으로 재원배분이 불가능한 바, 명시이월 요청에 신중을 기하고, 승인된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연도 내 우선 집행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사. 사고이월 관련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는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2018회계연도에 발생한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10조 4,884억 900만원)의 3.4%인 3,585억 4,700만원이 발생되었음

〈표 3-47〉 사고이월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사 고 이 월				
		건수	사고이월액(B)		전년대비 증감액	
			비율 (B/A)		증감률	
2018	10,488,409	891	358,547	3.4	56,974	18.9
2017	9,921,584	1,279	301,572	3.0	83,762	38.5
2016	8,850,089	671	217,810	2.5	75,543	53.1

- 2018회계연도의 사고이월액(3,585억 4,700만원)이 직전회계연도(3,015억 7,200만원)보다 569억 7,500만원 증가된 것은
  - 2018회계연도 시설사업비에서 사고이월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2018회계연도 최종예산액을 기준으로 시설사업비 규모(8,675억 3,500만원)가 직전회계연도(7,576억 5,400만원)보다 1,098억 8,100만원 증가한 바,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도 직전회계연도(2,968억 7,200만원)보다 548억 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48〉 시설사업비 사고이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회계연도 (A)	2017회계연도 (B)	비교증감 (A-B)
사	고 이 월 액	358,547	301,572	56,975
시	설 사업비 사고이월액	351,679	296,872	54,807
최	종 예산액 중 시설사업비	867,535	757,654	109,881

### (1) 사고이월 발생사유

-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검토하면, ① 계약기간 미도래가 전체 사고이월액(3,585억 4,700만원)의 48.2%, 1,730억 300만원, ② 추경예산편성사업이 2.9%, 102억 3,000만원, ③ 사전절차 지연이 4.9%, 175억 300만원, ④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이 14.3%, 513억 9,000만원, ⑤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 추진이 29.5%, 1,056억 7,100만원, ⑥ 기타 0.2%, 7억 5,0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3-49〉 사고이월 발생사유별 내역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총계	① 계약기간 미도래	② 추경편성 사업	③ 사전절차 지연	④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⑤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추진	⑥ 기타
건수	891	263	47	49	73	453	6
이월액	358,547	173,003	10,230	17,503	51,390	105,671	750
비율	100.0	48.2	2.9	4.9	14.3	29.5	0.2

※ 자료근거 :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1941 ('18. 3. 2.)

### ① 계약기간 미도래로 사고이월된 사업

○ 계약기간 미도래에 따라 발생한 사고이월(263건, 1,730억 300만원) 중 이월액이 10억원 이상인 세부사업은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신증설**과 관련된 시설사업비로 2018년도에 체결한 계약기간(준공일)이 도래하지 않아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송실고 급식실및학생식당 신증축**은 2018회계연도 명시이월('17년 11월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①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증축 사업과 연계하여 복합건축물로 증축하기 위한 설계용역과 ② 교육부 특별교부금에 대한 용도(사업) 변경 승인 절차로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18년 12월, 계약체결('19년 8월 준공예정)이 불가피하여 예산현액 18억 2,2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임
- **당곡초 급식실및학생식당 신증축**(예산현액 14억 400만원) 및 **당곡초 강당겸체육관 증축**(예산현액 23억 8,600만원)은 '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두 사업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9월

까지 설계공모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에 공사계약('19년 12월 준공예정)을 체결하여 **급식실및학생식당 신증축**은 예산현액 14억 400만원 전액, **강당겸체육관 증축**은 예산현액의 99.7%인 23억 7,9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항동유치원 신설**은 '17년 항동지구 공공주택 입주시기 변경으로 개원시기를 조정('18년 9월→'19년 3월)함에 따라 '18회계연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18년 2월 공사계약('19년 3월 준공)을 체결하고 완료된 공정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후 남은 잔액 28억 8,900만원(예산현액 58억 8,300만원의 49.1%)을 사고이월한 것임

- **가칭) 고이초 학교신설**은 '18년 5월부터 12월까지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 공사계약(2019년 12월 준공예정)이 체결됨에 따라 예산현액 23억 1,000만원 전액이 사고이월된 것임

- **천일중 강당겸체육관**은 급식실및학생식당 신증축 사업과 병행하여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함에 따라 '18년 2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 일상감사, 조달청 계약의뢰를 추진하여 12월에 공사계약('19년 11월 준공예정)이 체결되어 예산현액(31억 1,7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학교 시설사업비 중 대규모 신·증축사업 등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계속공사로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적용 예외이므로 연도 내 집행

가능한 범위의 예산 편성과 사고이월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0〉 계약기간 미도래 사고이월 주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세 부 사업명	사 업 내 역	예산 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업기간 <sup>주1)</sup>	재원
					비율		
학교급식 환경개선	송실고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822	0	1,822	100.0	2018.1.~2019.8.	명시이월
	당곡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증축	1,404	0	1,404	100.0	2018.1.~2019.12.	본예산
학 교 신 증 설	항 동 유 치 원 설 신	5,883	2,992	2,889	49.1	2018.1.~2019.3.	명시이월 본예산
	가칭) 고이초 설 학 교 신 설	2,310	0	2,310	100.0	2018.5.~2019.12.	1회추경
학교시설 증 개 축	천 일 중 강 당겸체육관	3,117	0	3,117	100.0	2018.2.~2019.11.	명시이월 본예산
	당 곡 초 강 당겸체육관	2,386	3	2,379	99.7	2018.1.~2019.12.	본예산
	원 목 초 다목적체육관	2,435	3	2,424	99.5	2018.11.~2019.9.	본예산
	용 두 초 다목적체육관	2,205	3	2,196	99.6	2018.11.~2019.6.	명시이월
	남 사 초 강 당겸체육관	1,343	0	1,341	99.9	2018.11.~2019.11.	본예산
	신 명 중 강 당겸체육관	1,193	0	1,189	99.7	2018.11.~2019.7.	본예산
	아 주 초 강 당겸체육관	1,102	0	1,102	100.0	2018.12.~2019.9.	본예산

주1. 2018년도 계약기간

## ②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사업(47건, 102억 3,000만원)의 경우 학교신증설,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학교급식환경개선 및 직속 기관시설사업 등 시설사업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을 검토하면,
  - **안전관리 내진보강** 사업은 제1회 추경(특별교부금)으로 확보되어 2018년 8월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연도 말 계약체결이 진행되었으나, 이미 설계용역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 완료 불가하여 예산현액(18억 1,700만원)의 73.8%인 13억 4,2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서울체육고 수영장 개보수** 사업은 수영장 개보수비(15억 8,600만원)가 '18년 6월에 확보되어 '18년 1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 공사계약(2019년 6월 준공예정)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현액(15억 8,600만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임
  
  - **교육연구정보원 외벽보수**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18년 12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설공사 품질 확보 및 공사근로자 안전을 위해 공사 시기를 동절기 이후로 조정함에 따라 예산현액(7억 5,600만원)의 95.5%, 7억 2,200만원을 사고이월한 것임
  
  - **구일중 본관동 창호개선** 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특별교부금)에 편성되어 '18년 12월 공사계약(2019년 2월 준공)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현액(7억 3,200만원)의 87.6%, 6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응암초 병설유치원 신설** 사업은 초등학교 교실 재배치 및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신설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8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 공사계약(2019년 3월 준공)을 체결하여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예산현액(7억 500만원)의 94.3%, 6억 6,500만원 사고이월된 것임

○ 시설사업의 경우, 추경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면 회계연도 잔여기간 중 공사 추진에 한계가 있어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바, 추경 시에는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한정하여 편성하고, 회계연도 종료시점을 고려한 공정관리 등의 방안으로 사고이월 규모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51〉 추경편성에 따른 사고이월 주요 내역(5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업기간 <sup>주1</sup>
				비율	
(특별교부금) 안전관리 내진보강	1,817	154	1,342	73.8	2018.8.~2019.12.
서울체육고 수영장 개보수	1,586	0	1,586	100.0	2018.6.~2019.6.
교육연구정보원 외벽보수	756	18	722	95.5	2018.6.~2019.6.
(특별교부금) 구일중본관동창호개선	732	17	641	87.6	2018.7.~2019.2.
응암초 병설유치원 신설	705	27	665	94.3	2018.8.~2019.3.

주1. 2018년도 계약기간



### ③ 기타 사유에 따른 사고이월

- 기타 사업추진 중 사전절차 지연, 장애발생, 학사일정에 따른 방학 중 공사 추진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581건 1,753억 1,400만원) 사업을 검토한 바,
  - **가칭)서진학교 신설**은 '18년 5월, 공사비 증가분 반영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이후, 8월까지 설계용역 및 공사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 민원으로 특수학교 개교 시기가 변경('19년 3월 →'19년 9월)되어 공사기간도 연장됨에 따라 예산현액 193억 8,500만원의 95.3%, 184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공항고 이전** 사업은 '17년 11월부터 장기계속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폭염, 강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을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2019년 5월 준공예정) 되어 예산현액 156억 2,400만원의 75.3%인 117억 6,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공항초 증설** 사업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18년 3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공항 지하철도 관련 협의, 폭염, 강우 등으로 인해 공사계약기간을 60일 연장함에 따라(2019년 3월 준공) 예산현액(28억 1,600만원)의 50.7%인 14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충암중고 바닥개선** 사업 및 **충암중고 외벽개선 및 기타** 사업은 법인의 비리연루와 관련하여 시설사업비 지원이 유보 결정되었으나, 2018년 7월에 시설비 집행 유보가 해제된 바, '18년 12월 공사계약(2019년 8월 준공예정)이 체결됨에 따라 **충암중고 바**

**닥개선** 사업 예산현액 18억 5,400만원의 81.8%인 15억 1,600만원과 **총암중고 외벽개선 및 기타** 사업 예산현액 15억 7,000만원의 93.1%인 14억 6,2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정책안전기획관 소관 **소규모안전체험관**은 2018년도 본예산(특별교부금)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 기본계획 변경 이후 설계공모,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3~11월)이 지연되어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한 12월 공사계약(2019년 12월 준공예정)을 체결함에 따라 예산현액 14억 6,900만원의 98.4%인 14억 4,5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시설사업 추진 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특수성과 시간적 한계가 있으나, 이월은 결국 다음연도 세출재원을 선점하는 부서 이기주의적 행태로 해석될 수도 있어 회계연도 말 도래하기 전 원포인트 감추경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결산 결과에 긍정적 재정환경이 발생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52〉 기타 사유에 따른 사고이월 주요 내역(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내 역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업기간 <sup>주1</sup>
				비율	
가칭)서진학교 신설	19,385	876	18,480	95.3	2018.2.~2019.9.
안전관리(내진보강)	18,295	990	13,029	71.2	2018.7.~2019.12.
공 항 고 이 전	15,624	3,853	11,764	75.3	2018.1.~2019.5.
혜성여고 체육관 및 학생식당 증축	4,296	0	4,243	98.8	2018.12.~2019.12.
학교 교육 용 클라우드시스템 구축	3,260	0	1,723	52.9	2018.9.~2019.12.
공 항 초 증 설	2,816	1,387	1,428	50.7	2018.1.~2019.3.
남명초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2,308	83	2,225	96.4	2018.8.~2019.12.
삼정중 강당겸체육관 시설비	2,107	51	2,056	97.6	2018.8.~2019.12.
월촌중 강당겸체육관 증축	2,004	534	1,470	73.4	2018.8.2019.12.
충암중·고 바닥 개선	1,854	37	1,516	81.8	2018.8.~2019.8.
양명초 체육관 증축	1,600	0	1,600	100.0	2018.12.~2019.12.
충암중·고 외벽개선 및 기타	1,570	46	1,462	93.1	2018.8.~2019.8.
소 규모 안전 체험	1,469	23	1,445	98.4	2018.3.~2019.12.
가곡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443	434	1,009	69.9	2018.3.~2019.12.
영도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172	74	1,095	93.5	2018.9.~2019.12.
삼정중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1,171	30	1,141	97.4	2018.3.~2019.12.

주1. 2018년도 계약기간

## 아. 순세계잉여금 관련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채 상환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의미하는 바,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은 직전회계연도(5,151억 8,800만원)보다 2,546억 7,300만원 증가한 7,698억 6,100만원임

〈표 3-53〉 최종예산대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현황 ('18~'1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7	2016
최	종	예	산	
	①	10,051,522	9,596,337	8,628,272
전	년	도	이	월
	②	436,887	325,247	221,817
예	산	현	액	
	③=①+②	10,488,409	9,921,584	8,850,089
세	입	결	산	액
	④	10,912,569	9,951,120	9,175,804
세	출	결	산	액
	⑤	9,600,564	8,999,045	8,345,115
결	산	상	잉	여
	⑥=④-⑤	1,312,005	952,075	830,689
	명	시	이	월
	⑦	183,598	135,315	107,437
	사	고	이	월
	⑧	358,547	301,572	217,810
순	세	계	잉	여
	⑩=⑥-(⑦+⑧)	769,861	515,188	505,442

-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회계연도 보다 증가한 것은 서울시의 지방세 수입 증가로 당초 세입예산보다 4,029억 100만원 초과 수납됨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법정이전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판단됨

〈표 3-54〉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B)	초과수납액 (C=B-A)	비 고
2018	10,488,409	10,912,569	424,160	법정이전수입 초과수납액 402,901
2017	9,921,584	9,951,120	29,536	법정이전수입 초과수납액 10,716 자체수입 초과수납액 18,835
2016	8,850,089	9,175,804	325,715	법정이전수입 초과수납액 316,159

- 서울시교육청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7,698억 6,100만원) 중 6,717억 9,600만원을 이미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고, 나머지 980억 6,500만원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여 2019년 5월 24일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음

〈표 3-55〉 순세계잉여금 예산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8	2017	2016
순세계잉여금(A)		769,861	515,188	505,442
다음연도 예산반영 (반영률)	본예산(B) (B/A)	671,796 (87.3)	506,772 (98.4)	311,864 (61.7)
	추경예산(C) (C/A)	98,065 (12.7)	8,416 (1.6)	193,578 (38.3)

- 그러나, 결산 시 정산이 완료되지 못하여 확정할 수 없었던 보조금 집행잔액(136억원)과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 지정지원금(43억원)이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반납금 및 사업비로 반영된 것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인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7,519억원 규모인 것으로 검토됨

## 자. 지방교육채 관련

- 2018회계연도 말 지방교육채 현재액은 1조 1,691억 4,4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1조 3,261억 1,000만원)보다 △1,569억 6,600만원(△11.8%) 감소된 바,

〈표 3-56〉 지방교육채 연도말 현재액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증감			당해연도말 현재액	이자납부액
		발행(차입) (A)	상환 (B)	증감 (A-B)		
합 계	1,326,110	133,440	290,406	△156,966	1,169,144	31,043
2014 학교신설	59,514	0	0	0	59,514	1,524
09년 공자기금 인수 지방채 차환	106,209	0	0	0	106,209	3,176
교원명예퇴직	256,175	0	256,175	△256,175	0	5,260
공립유치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68,763	0	0	0	268,763	6,093
교부금차액보전	61,974	0	0	0	61,974	1,779
2015 학교신설	152,410	0	34,231	△34,231	118,179	3,911
교육환경 개선	217,414	0	0	0	217,414	3,435
교부금차액보전	152,638	0	0	0	152,638	4,396
2016 학교신설	51,013	0	0	0	51,013	1,469
교육환경 개선	0	133,440	0	133,440	133,440	0

- 2018회계연도 중에 상환한 지방교육채는 지난 2015년도에 발행한 교원명예퇴직 지방교육채(2,561억 7,500만원) 전액을 조기상환

하고, '15년도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1,524억 1,000만원)중 342억 3,100만원을 조기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행(증가)의 경우 교육환경개선을 사유로 1,334억 4,000만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됨

- 2018회계연도 중 발행된 지방교육채 잔액의 경우에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승인한 것으로서 향후 교부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가 상환될 것이나,
  - 보통교부금의 총액 범위 내에서 상환액이 산정되고, 그 규모가 2018년도말 1조 1,691억 4,400만원으로 검토되어, 상환 시까지 교육청의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표 3-57〉 지방교육채 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9	2018	2017	2016	2015
지방채 잔액		1,105,461	1,169,144	1,326,110	1,565,666	1,188,295
전년 대비	증감액	△63,683 <sup>주1</sup>	△156,966	△239,556	377,371	815,069
	증감률	△5.4	△11.8	△15.3	31.8	218.3

[참고] 주1. 2019년도 증감액 = 발행액 0원 - 상환액 63,683백만원 (2019년도 본예산 기준)



## 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

- 2018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학교(특수학교 제외) 273교의 법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764억 400만원이나 실제 법인이 부담한 부담금은 24.0%, 183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부담률(23.5%) 보다 0.5%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3-58〉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

학년도	재정결함지원 대상 학교 수	법정부담금 총액		
		법정부담금 소요액(A)	실제부담금 (B)	부담률 (B/A)
2018 <sup>주1</sup>	273	76,404	18,368	24.0
2017	273	73,585	17,318	23.5
2016	273	70,647	17,050	24.1

주1. 2018회계연도는 중간정산 결과에 의함

〈표 3-59〉 사립 중·고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개교, %)

학년도	지원대상 학교			전액미부담	일부부담	전액 부담
	계	중학교	고등학교			
2018	273	108	165	25 (9.2)	216 (79.1)	32 (11.7)
2017	273	108	165	26 (9.5)	215 (78.7)	32 (11.8)
2016	273	108	165	25 (9.1)	215 (78.8)	33 (12.1)

- 사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수익성이 낮은 토지이고, 현금자산도 현재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사학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적기에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부족분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운영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바,
- 해당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교수·학습 예산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감액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3-60〉 사립 중·고 의무부담금 미부담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담 현황

(단위 : 개교, 백만원)

학년도	계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학교수	학교운영비 부담 금액	전년 대비 증감
2017	171	9,812	△14	64	2,487	△5	107	7,325	△9
2016	174	9,826	959	65	2,492	128	109	7,334	831
2015	169	8,867		64	2,364		105	6,503	

※ 2018학년도 재정결함지원금은 2019년 7월에 최종 정산함에 따라 2018학년도 미작성

## 카. 기타 검토의견

### (1) 세출예산 집행 관련

-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제출된 다음연도 이월(명시·사고)사업 명세서 중 ① **영어교사심화연수지원**(집행잔액 △55천원), ② **학생평가내실화**(집행잔액 △12,897천원)사업은 예산현액보다 지출액 및 다음연도이월액이 초과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마이너스’로 표기하여 제출되었음

〈표 3-61〉 예산현액 초과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세부사업	사업명	목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외국어교육활동지원		184,080	9,635	174,500	0	△55
	영어교사심화연수지원(특교)		184,080	9,635	174,500	0	△55
		운영비	184,080	9,635	174,500	0	△55
	학력평가관리		1,025,040	1,000,240	37,697	0	△12,897
	학생평가내실화(특교)		1,025,040	1,000,240	37,697	0	△12,897
		운영비	1,025,040	1,000,240	37,697	0	△12,897

- 또한 사고이월사업 내역 중 **청담초 강당검체육관증축**은 예산현액 대비 사고이월액이 100%를 초과하여 제출되었음

〈표 3-62〉 사고이월사업 중 이월율 100% 초과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이월사업명	예산현액 (A)	원인 행위월일	사 고 이월액 (B)	이월률 (B/A)
강 남 서 초	청담초 강당겸체육관 증축	1,102	12.18.	1,113	101.0

- 그러나,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 마이너스 표기’ 와 ‘예산 현액을 초과한 사고이월’ 문제는 지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에 적시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하였으나, 개선 되지 아니한 것임
- 세출예산의 집행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 절차(이용, 전용, 변경 등)를 통해 예산 변경한 후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선 교육현장에서 행정편의에 따라 일부 사업내용 간 실제 지출액에 대한 가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이나
- 「지방회계법」은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5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이미 “당겨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한 바,
- 동 사례와 같이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집행잔액이 마이너스 표기 되고 사고이월이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이월된 것은 회계질서 문란 행위일 수밖에 없어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4.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가. 개 요

-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에 의해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 발생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고 회계연도말의 재정 상태와 1회계연도 동안의 재정 운영결과를 확정하여 작성하는 결산서의 일부임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18회계연도 말 자산은 15조 4,219억 5,300만원, 부채는 1조 9,683억 7,6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3조 4,535억 7,700만원임
- 2018회계연도의 수익은 9조 9,532억 8,200만원이며, 비용은 9조 2,067억 1,800만원인 바,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7,465억 6,400만원임

〈표 3-63〉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재 정 상 태 표			재 정 운 영 표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18	15,421,953	1,968,376	13,453,577	9,953,282	9,206,718	746,564
2017	14,872,540	2,165,527	12,707,013	9,139,145	8,823,286	315,859
증 감	549,413	△197,151	746,564	814,137	383,432	430,705

## 나.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특정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표 3-64〉 재정상태표(요약)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8(A)		2017(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자산 총계	15,421,953	100.0	14,872,540	100.0	549,413
I. 유동자산	1,704,732	11.1	1,432,074	9.7	272,658
II. 투자자산	294,520	1.9	287,422	1.9	7,098
III. 유형자산	13,417,253	87.0	13,148,828	88.4	268,425
IV. 무형자산	597	0.0	1,009	0.0	△412
V. 기타비유동자산	4,851	0.0	3,207	0.0	1,644
부채 및 순자산 총계	15,421,953	100.0	14,872,540	100.0	549,413
부채 총계	1,968,376	12.8	2,165,527	14.6	△197,151
I. 유동부채	198,057	1.3	120,170	0.8	77,887
II. 장기차입부채	1,767,277	11.5	2,042,476	13.8	△275,199
III. 기타비유동부채	3,042	0.0	2,881	0.0	161
순 자산	13,453,577	87.2	12,707,013	85.4	746,564
I. 고정순자산	11,852,587	76.8	11,630,401	78.2	222,186
II. 특정순자산	45,291	0.3	17,890	0.1	27,401
III. 일반순자산	1,555,699	10.1	1,058,722	7.1	496,977

- 2018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5조 4,219억 5,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자산(14조 8,725억 4,000만원) 보다 5,494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음
- 주요 증가내역은 ① “유동자산” 중 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 4,069억 3,000만원, 서울시로부터의 미수지방 자치단체이전수익 감소분 △939억 3,900만원, 미수수익 △55억 4,200만원 감소, 기타의유동자산 △78억원 감소 ② “유형자산” 중 교육환경개선사업 증가로 인한 건설 중인 자산 2,703억 9,400만원 증가 ③ “투자자산” 중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적립에 의한 특정기금 274억 100만원 증가, 장기학자대여금 △207억 2,600만원 감소 ④ “기타비유동자산” 중 장기임차보증금 16억 9,000만원 증가, 세외장기현금 △4,700만원 감소 등임
- 자산은 토지 및 건물 등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의 87.0%(13조 4,172억 5,300만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이 11.1%(1조 7,047억 3,200만원), 장기학자대여금, 퇴직급여예치금 등의 투자자산이 1.9%(2,945억 2,000만원)를 차지함
- 2018회계연도 말 **총부채**는 1조 9,683억 7,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말 부채(2조 1,655억 2,700만원) 보다 △1,971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음

〈표 3-65〉 부채별 세부내역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A)		2017(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부 채 총 계	1,968,376	100.0	2,165,527	100.0	△197,151
I. 유동부채	198,057	10.1	120,170	5.5	77,887
1. 미지급이자비용	3,590	0.2	5,182	0.2	△1,592
2. 기타미지급비용	1,207	0.1	0	0.0	1,207
3. 수업료선수금	18,067	0.9	19,751	0.9	△1,684
4. 담배소비세전입금선수금	7,413	0.4	0	0.0	7,413
5. 임대료선수금	309	0.0	268	0.0	41
6. 사용료선수금	723	0.0	775	0.0	△52
7. 자산매각선수금	21,200	1.1	7,857	0.4	13,343
8.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63,683	3.2	0	0.0	63,683
9. 유동성민자리스부채	54,527	2.8	52,948	2.5	1,579
10. 세외예수금	27,338	1.4	33,389	1.5	△6,051
II. 장기차입부채	1,767,277	89.8	2,042,476	94.3	△275,199
1. 장기금융기관차입금	619,284	31.5	839,933	38.8	△220,649
2. 장기공공자금관리기금차입금	486,177	24.7	486,177	22.5	0
3. 민자리스부채	661,816	33.6	716,366	33.0	△54,550
III. 기타비유동부채	3,042	0.1	2,881	0.1	161
1. 퇴직급여충당부채	2,929	0.1	2,721	0.1	208
2. 장기세외예수금	113	0.0	160	0.0	△47

○ 주요 증가내역은 ① “유동부채” 중 유동성장기금융기관차입금, 자산매각선수금, 담배소비세전입금선수금 및 유동성민자리스부채 860억 1,800만원 증가, ② “기타비유동부채” 중 퇴직급여충당부채 2억 800만원 증가 등임



- 주요 감소내역은 ① “장기차입부채” 중 장기금융기관차입금 및 민자리스부채 △2,751억 9,900만원 감소 ② “유동부채” 중 세외예수금, 수업료선수금 및 미지급이자비용 △93억 2,700만원 감소 등임
- 부채는 학교신설, 교부금차액보전 등의 지방채 및 BTL 사업상환액으로 구성된 장기차입부채가 89.8%(1조 7,672억 7,700만원), 유동부채가 10.1%(1,980억 5,7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가 0.1%(30억 4,200만원)을 차지함
- 2018회계연도 교육청 부채비율은 14.6%로 직전회계연도(17.0%) 보다 △2.4%p 감소한 바,

〈표 3-66〉 부채비율 및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순자산 (A)	부채 (B)	부채비율(B/A)		지방교육채 발행액
				전년대비증감	
2018	13,453,577	1,968,376	14.6	△2.4	133,440
2017	12,707,013	2,165,527	17.0	△3.2	0
2016	12,391,155	2,502,278	20.2	2.5	421,065
2015	12,165,005	2,162,350	17.7	7.0	815,070
2014	12,273,045	1,321,559	10.7	0.1	242,143

- 2018회계연도 중 순자산이 직전회계연도(12조 7,070억 1,300만원) 보다 7,465억 6,400만원 증가되고, 이전 회계연도에 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상환으로 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2018회계연도 교육청 유동비율은 860.7%로 직전 회계연도(1,191.7%) 보다  $\Delta 331.0\%p$  감소한 바, 유동부채의 증가율(64.8%)이 유동자산의 증가율(19.0%) 보다 3배 정도 높기 때문인 것으로 검토됨

〈표 3-67〉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A)	2017(B)	증감(C=A-B)	
			증감률(C/B)	
유동자산(A)	1,704,732	1,432,074	272,658	19.0
유동부채(B)	198,057	120,170	77,887	64.8
유동비율(A/B)	860.7	1,191.7	-	-

-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으로 2018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13조 4,535억 7,7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12조 7,070억 1,300만원) 보다 7,465억 6,4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자산이 직전회계연도 보다 5,494억 1,300만원 증가한 반면, 부채는 직전회계연도 보다  $\Delta 1,971$ 억 5,100만원 감소하였기 때문임

## 다.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지방회계법」에 근거하여 한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결과인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며, 운영차액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임

〈표 3-68〉 재정운영표(요약)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8(A)		2017(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수익 총계(A)	9,953,282	100.0	9,139,145	100.0	814,137
I. 이전수익	9,676,426	97.2	8,885,698	97.2	790,728
II. 자체수익	135,888	1.4	148,567	1.6	△12,679
III. 기타수익	140,968	1.4	104,880	1.1	36,088
비용 총계(B)	9,206,718	100.0	8,823,286	100.0	383,432
I. 인적자원운용	4,401,315	47.8	4,281,739	48.5	119,576
II. 교수-학습활동지원	459,089	5.0	469,285	5.3	△10,196
III. 교육복지지원	1,459,554	15.9	1,298,467	14.7	161,087
IV. 보건/급식/체육활동	52,165	0.6	45,250	0.5	6,915
V. 학교재정지원관리	1,895,858	20.6	1,795,759	20.4	100,099
VI. 학교교육여건개선	131,649	1.4	133,872	1.5	△2,223
VII. 평생교육	20,137	0.2	19,239	0.2	898
VIII. 직업교육	689	0.0	576	0.0	113
IX. 교육행정일반	104,188	1.1	78,245	0.9	25,943
X. 기관운영관리	41,402	0.4	39,705	0.5	1,697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3,208	0.9	87,424	1.0	△4,216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557,464	6.1	573,725	6.5	△16,261
운영차액(A-B)	746,564		315,859		430,705

○ 2018회계연도의 **총수익**은 직전회계연도(9조 1,391억 4,500만원)보다 8,141억 3,700만원 증가한 9조 9,532억 8,200만원으로 이전수익은 총수익의 97.2%, 9조 6,764억 2,600만원이고, 자체수익은 1.4%, 1,358억 8,800만원, 기타수익이 1.4%, 1,409억 6,800만원임

〈표 3-69〉 재정운영표 수익 세부내역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8(A)		2017(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수익 총계	9,953,282	100.0	9,139,145	100.0	814,137
I. 이전수익	9,676,426	97.2	8,885,698	97.2	790,728
중앙정부이전수익	5,858,680	58.9	5,259,509	57.5	599,17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3,633,225	36.5	3,463,832	37.9	169,393
기 타 이 전 수 익	184,521	1.8	162,357	1.8	22,164
II. 자체수익	135,888	1.4	148,567	1.6	△12,679
등록금수익	128,209	1.3	140,783	1.5	△12,574
수익자부담수익	1,952	0.0	1,945	0.0	7
임대료수익	430	0.0	472	0.0	△42
사용료수익	4,652	0.1	4,736	0.1	△84
수수료수익	645	0.0	631	0.0	14
III. 기타수익	140,968	1.4	104,880	1.2	36,088
이자수익	15,167	0.1	11,014	0.1	4,153
자산처분이익	15,890	0.2	7,560	0.1	8,330
제재금수익	1,448	0.0	2,183	0.0	△735
잡수익	36,156	0.4	31,261	0.3	4,895
기타의기타수익	72,307	0.7	52,862	0.7	19,445

- 2018회계연도 재무구조의 자주성을 검토하기 위해 총수익 대비 자체수익의 비율(구성비)인 재정자립도를 산정해 보면, 2018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1.4%로 직전회계연도(1.6%)보다  $\Delta$  0.2%p 낮아진 바,
  - 직전회계연도 보다 자체수익은 감소( $\Delta$ 126억 7,900만원)한 반면 이전수익은 증가(7,907억 2,800만원)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만큼 이전수익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진 것으로 사료됨
  
- 2018회계연도의 **총비용**은 직전회계연도(8조 8,232억 8,600만원) 보다 3,834억 3,200만원이 증가한 9조 2,067억 1,800만원으로 인적자원운용 47.8%(4조 4,013억 1,500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0.6%(1조 8,958억 5,800만원), 교육복지지원 15.9%(1조 4,595억 5,400만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6.1%(5,574억 6,400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5.0%(4,590억 8,900만원) 등임
  - 주요 증가내역은 정규직·비정규직 인건비 1,169억 2,800만원, 공·사립학교운영비 1,000억 9,900만원, 교육과정개발운영 152억 1,600만원, 급식지원 1,513억 9,100만원 등이며,
  - 주요 감소내역은 ICT활용교육  $\Delta$ 138억 700만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Delta$ 162억 6,100만원, 학비지원  $\Delta$ 121억 9,600만원, 학생생활지도  $\Delta$ 62억 9,800만원 감소 등임
  
- 2018회계연도 수익과 비용의 차액인 **운영차액**은 7,465억 6,4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3,158억 5,900만원) 보다 4,307억 500만원 증가한 바, 수익증가액(8,141억 3,700만원)이 비용

증가액(3,834억 3,200만원) 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됨

- 「지방회계법」에 의한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통하여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재정보효율성을 검토하면,

〈표 3-70〉 성질별 재정운영표

2018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8(A)		2017(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수익 총계(A)	9,953,282	100.0	9,139,145	100.0	814,137
I. 이전수익	9,676,426	97.2	8,885,698	97.2	790,728
II. 자체수익	135,888	1.4	148,567	1.6	△12,679
III. 기타수익	140,968	1.4	104,880	1.2	36,088
비용 총계(B)	9,206,718	100.0	8,823,286	100.0	383,432
I. 인건비	3,632,773	39.5	3,548,973	40.2	83,800
II. 복리후생비	766,950	8.3	733,420	8.3	33,530
III. 운영관리비	902,062	9.8	825,447	9.4	76,615
IV. 이전비용	3,826,661	41.6	3,571,311	40.5	255,350
V. 기타비용	78,272	0.8	144,135	1.6	△65,863
운영차액(A-B)	746,564		315,859		430,705

-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총수지 비율로 측정하는 바, 2018회계연도 총수지비율은 직전회계 연도 96.5% 보다 △4.0%p 낮아진 92.5%로 재정운영상의 안정성이 직전회계연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사료됨

〈표 3-71〉 총수지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총비용(A)	9,206,718	8,823,286	383,432	4.3
총수익(B)	9,953,282	9,139,145	814,137	8.9
총수지비율(A/B)	92.5	96.5	-	-

○ 효율성은 경상경비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경상경비 비율로 측정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경상경비 비율은 99.1%로 직전회계연도(98.4%)보다 0.7%p 증가한 바,

- 경상경비는 고정적 지출성격이 강한 비용으로서 경상경비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경직성이 높아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재정효율성은 직전회계연도에 이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표 3-72〉 경상경비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7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경 상 경 비 ( A )	9,128,445	8,679,151	449,294	5.1
총 비 용 ( B )	9,206,717	8,823,286	383,431	4.3
경 상 경 비 비 율 ( A / B )	99.1	98.4	-	-

## 라.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운영차액과 고정순자산·특정순자산·일반순자산의 증감 내역을 나타냄

〈표 3-73〉 순자산변동표(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A)		2017(B)		증감(A-B)
		구성비		구성비	
기말순자산	13,453,577	100.0	12,707,013	100.0	746,564
고정순자산					
I.전기이월고정순자산	11,630,401		11,475,642		154,759
II.고정순자산의증가	587,658		532,945		54,713
III.고정순자산의감소	365,471		378,186		△12,715
IV.차기이월고정순자산	11,852,587	88.1	11,630,401	91.5	222,186
특정순자산					
I.전기이월특정순자산	17,889		5,928		11,961
II.특정순자산의증가	28,369		12,004		16,365
III.특정순자산의감소	967		43		924
IV.차기이월특정순자산	45,291	0.3	17,889	0.2	27,402
일반순자산					
I.수정후전기이월일반순자산	1,058,723		909,585		149,138
II.운영차액	746,564		315,859		430,705
III.일반순자산의증가	366,438		378,229		△11,791
IV.일반순자산의감소	616,026		544,950		71,076
V.차기이월일반순자산	1,555,699	11.6	1,058,723	8.3	496,976



- **기말순자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자산에 당해 회계연도 동안에 발생한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가 및 감소를 가감하여 산출하는 바,
- 2018회계연도의 순자산은 13조 4,535억 7,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2조 7,070억 1,300만원) 보다 7,465억 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이 총순자산의 88.1%(11조 8,525억 8,700만원), 차기이월특정순자산은 총순자산의 0.3%(452억 9,100만원),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은 총순자산의 11.6%(1조 5,556억 9,900만원)로 구성됨
  - **고정순자산**의 경우, 학교신설 등에 따른 토지 및 건물의 증가, 집기비품의 증가 등으로 5,876억 5,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당기상각액(감가상각비) 3,045억 5,100만원 적용 등으로 △3,654억 7,100만원이 감소되어 결과적으로 증감액 2,221억 8,6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차기이월고정순자산은 11조 8,525억 8,700만원으로 나타남
  - **특정순자산**은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의 기금 적립액 증가로 차기이월특정순자산은 452억 9,100만원임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 및 특정순자산의 증감에 따라 △2,495억 8,800만원 감소하였고, 운영차액 7,465억 6,400만원이 반영되어 차기이월일반순자산은 1조 5,556억 9,900만원임

## 5. 성과보고서

### 가. 개 요

-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활동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예산과 연계하여 시·도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성과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분·집행한 후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하여 보고하는 결산서의 구성서류임

### 나. 검토의견

- 2018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2개, 단위과제 94개, 성과지표 7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76개 중 64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달성률은 84.2%임
- 목표달성정도에 따라 구분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 초과 달성한 성과지표 개수는 10개(13.1%)이고, 100% 이상 130% 미만으로 달성한 성과지표 개수는 54개(71.1%)이며,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미달성 성과지표 개수는 12개(15.8%)임

〈표 3-74〉 성과 총괄

(단위 : 개, %)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달성등급		
			초과 달성 <sup>주1</sup>	달성 <sup>주2</sup>	미달성 <sup>주3</sup>
5	22	76 (100.0)	10 (13.1)	54 (71.1)	12 (15.8)

주1.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30% 이상인 지표수

주2.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이상 130% 미만인 지표수

주3.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도가 100% 미만인 지표수

○ 교육부 성과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차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가 일부 누락되어 제출된 바,

- 동 문제를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도 적시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실제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율 등 총 9개의 성과지표(표6-2)의 경우, 2회계연도('17~'18회계연도) 연속하여 초과달성 내지 미달성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검토가 누락되어있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성과보고서 작성 시 초과달성 혹은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동 지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기술되도록 관리함으로써,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목표수준의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75〉 초과 달성 및 미달성 성과지표 현황

부서명	성과지표명	
	초과달성 (10개)	미달성 (12개)
감 사 관	· 교육행정지원시스템 이용률	· 공공기관 청렴도
참여협력담당관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율* · 학부모회 활동 증가 비율 · 교육거버넌스 구성원의 사업협력 만족도*
노사협력담당관		· 교원노사관계 직무연수 참여율
교육혁신과	·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률 · 과학탐구·실험수업시수 비율*	· 학교업무정상화안착 지원에 따른 교육활동 전념 시간 증가 정도 · 초·중학교 무상교과용 도서 재고율
유아교육과		· 컨설팅 장학 참여 비율
초등교육과	·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 비율*	· 서울학습도움센터 맞춤학습상담 지원비율
중등교육과		· 외국어교원 역량강화
학생생활교육과	· 학업복귀프로그램 참여 비율* · 학생상담센터운영*	
학교지원과	· 후기고 진학정보 제공률 · 후기고 진학설명회 실시*	
교육재정과		· 중증장애인생산품구매율*
교육정보화과	· 나이스프로그램 기능 개선 노력도	
교육연구정보원	· 서울교육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자체 연구과제 추진비율	
학생교육원		· 학생교육원시설이용률*

\* 지표의 경우 2회계연도(2017~2018) 이상 초과달성 내지 미달성

**IV. 질의토론 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승인**

**VI.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VIII. 시정요구사항 : 없음**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안 번호	743
----------	-----

제출연월일 : 2019년 5월 31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재정활동 결과를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추후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결산 승인을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세입·세출 결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 세입 결산액 10조 9,125억 6천 9백만원
- 세출 결산액 9조 6,005억 6천 4백만원
- 차 인 잔 액 1조 3,120억 5백만원이며

이 중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1,835억 9천 8백만원과 사고이월액 3,585억 4천 7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698억 6천만원임.

#### 나. 채권현재액

2018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2,982억 9천 9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3,042억 4백만원에 비하여 59억 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다. 채무결산

2018회계연도 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조 1,691억 4천 4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1조 3,261억 1천만원에 비하여 1,569억 6천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라.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집행현황은

- 사 용 결 정 액	66억 4천 8백만원
- 지 출 액	51억 5천 7백만원
- 이 월 액	2억 3천 9백만원
- 사용결정액 중 집행잔액	12억 5천 2백만원임.

#### 마. 재무회계 결산

(1) 2018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자산은 15조 4,219억 5천 3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14조 8,725억 4천만원에 비하여 5,494억 1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2) 2018회계연도 말 재무회계상 총부채는 1조 9,683억 7천 6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2조 1,655억 2천 7백만원에 비하여 1,971억 5천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13조 4,535억 7천 7백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말 12조 7,070억 1천 3백만원에 비하여 7,465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바. 성과보고서 결산

2018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는 전략목표 5개, 성과목표 22개, 단위과제 94개, 성과지표 7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지표 76개 중 64개 지표에 대하여 목표를 달성하여 84.2%의 달성율을 거두었음.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34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다. 지방재정법 제50조

-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라. 지방회계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
2.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 ○ 결산 총괄

(단위:천원)

예산 현액 (A)	세입·세출결산			채무 상환	다음연도 이월비			보조금 집행 잔액 (F)	순세계 잉여금 (G)=B-E-F	집행잔액 (H) =A-D-E
	차인 잔액 (B)=C-D	세입 결산 (C)	세출 결산 (D)		소계 (E)	명시	사고			
10,488,409,203	1,312,005,426	10,912,569,140	9,600,563,714	0	542,144,777	183,598,187	358,546,590	0	769,860,649	345,700,712

## ○ 채권 및 채무

(단위:천원)

구분	2017년도말	당해연도 증·감			2018년도말
		계	증가	감소	
채권	304,203,948	△5,904,827	1,506,286	7,411,113	298,299,121
채무	1,326,110,121	△156,965,858	133,440,376	290,406,234	1,169,144,263